



2019. 4. 15.

2018회계연도 논산시 결산서 및 부속서류

# 결산검사의견서

논산시결산검사위원회

# 결 산 검 사 의 건 서

논산시장 귀하

2019년 4월 15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논산시 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8회계연도 논산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4월 15일까지(15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18회계연도 논산시의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논산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논산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논 산 시 결 산 검 사 위 원

|         |   |   |   |
|---------|---|---|---|
| 대표검사위원  | 구 | 본 | 선 |
| 검 사 위 원 | 박 | 천 | 문 |
| 검 사 위 원 | 윤 | 용 | 원 |
| 검 사 위 원 | 윤 | 병 | 권 |
| 검 사 위 원 | 최 | 찬 | 용 |



# 목 차

|                      |    |
|----------------------|----|
| I. 검사 기본방향 및 중점 검사사항 | 1  |
| 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 4  |
| 1. 논산시 재정의 개황        | 5  |
| 2. 세입·세출 결산          | 7  |
| 3. 기금 결산             | 18 |
| 4. 재무제표의 결산          | 20 |
| 5. 성과보고서             | 22 |
| 6. 결산서의 첨부서류의 결산     | 24 |
| III. 통합재정분석          | 26 |
| IV. 개선 및 권고사항        | 39 |

# I. 검사 기본방향 및 중점 검사사항

## 1.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결산검사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 지침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 법규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세입·세출 등 제장부의 열람, 증빙자료 대조, 현지 확인, 금고확인, 관계자에 대한 질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검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 2. 중점 검사 내용

### 가. 세입 분야

- 1)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 여부
- 2) 과세관련자료 적정 여부
- 3) 체납액 정리 및 적법 결손처분의 여부
- 4) 효율적인 자금 관리여부 및 운용 실태

### 나. 세출 분야

- 1) 세출예산의 적법편성 및 집행, 결산의 정확성 여부
- 2) 이월 예산 및 예산 전용의 적정 여부
- 3) 불용액에 대한 타당성 검사

#### 다. 기금 결산

- 1) 기금 관리 운영의 적정성 여부

#### 라. 재무제표

- 1) 재무제표 검토인의 적격성 및 검토절차의 적정성 확인 여부
- 2)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의 수정방안 및 개선 대안 제시 확인

#### 마. 성과보고서

- 1) 성과관리 체계의 적합성, 성과지표 타당성, 측정방법 적합성, 목표치의 적정성 확인
- 2) 성과실적의 신뢰성, 실적치의 적합성, 실적치 측정 타당성 확인

#### 바. 채권, 채무 관리

- 1) 채권·채무 관리의 적정 여부
- 2) 채무 변제의 이행 실태

#### 사. 재산 및 기금, 물품 관리

- 1) 공유재산 관리 실태 및 대장 등재 여부
- 2) 정수 물품 관리 실태 및 현재액표와 일치 여부

#### 아. 금고의 결산

- 1) 세입·세출회계별 결산액은 금고의 마감계수와 일치 여부
- 2) 수입계산서상의 금액과 금고의 수납액 결산금액과의 상호 부합 여부

위 내용 외에 시정 또는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은 별도 후술하였습니다.

## Ⅱ. 결산검사 총괄 현황

# 1. 논산시 재정의 개황

## 가. 재정여건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천원)

| 구 분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일반회계 | 세 입     | 592,733,874 | 601,797,951 | 690,982,476 | 786,531,404 | 860,041,155   |
|      | 세 출     | 495,677,857 | 514,601,166 | 554,035,327 | 615,515,204 | 634,571,900   |
|      | 결산상잉여금  | 97,056,017  | 87,196,785  | 136,947,149 | 171,016,200 | 225,469,256   |
| 특별회계 | 세 입     | 80,867,612  | 115,369,971 | 141,413,227 | 149,042,114 | 136,560,198   |
|      | 세 출     | 50,395,434  | 72,205,686  | 100,037,973 | 98,553,989  | 72,372,979    |
|      | 결산상잉여금  | 30,472,178  | 43,164,285  | 41,375,254  | 50,488,125  | 64,187,219    |
| 기 금  | 수 입     | 8,953,603   | 9,283,832   | 12,202,953  | 13,144,530  | 10,556,043    |
|      | 지 출     | 715,250     | 739,156     | 3,891,724   | 3,737,035   | 755,881       |
|      | 결산상잉여금  | 8,238,353   | 8,544,676   | 8,311,229   | 9,407,495   | 9,800,162     |
| 총 계  | 세 입(수입) | 682,555,089 | 726,451,754 | 844,598,656 | 948,718,048 | 1,007,157,396 |
|      | 세 출(지출) | 546,788,541 | 587,546,008 | 657,965,024 | 717,806,228 | 707,700,760   |
|      | 결산상잉여금  | 135,766,548 | 138,905,746 | 186,633,632 | 230,911,820 | 299,456,636   |

- 최근 5년간 평균 세입은 10.3%, 세출은 6.7%, 잉여금은 22.8% 증가하였음
- 세입의 주요 증가 요인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등이며, 세출의 증가 요인은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출 증가가 주요 원인임
-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현연도에 5,886천원임



논산시의 지난 5년간 채무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 천원)

| 구 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합 계    | 46,774,000 | 43,109,600 | 43,165,000 | 0    | 0    |
| 지 방 채  | 0          | 0          | 0          | 0    | 0    |
| 차 입 금  | 46,774,000 | 43,109,600 | 43,165,000 | 0    | 0    |
| 채무부담행위 | 0          | 0          | 0          | 0    | 0    |

○ 논산시 채무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0원이다.

## 2. 세입·세출 결산

### 가. 총 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 회 계 별 |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br>(A) | 세출결산액<br>(B) | 결산상잉여금<br>(C=A-B) |
|-------|-------------|--------------|--------------|-------------------|
| 합 계   | 981,189,965 | 996,601,353  | 706,944,878  | 289,656,475       |
| 일반회계  | 848,587,472 | 860,041,155  | 634,571,900  | 225,469,256       |
| 특별회계  | 132,602,493 | 136,560,198  | 72,372,979   | 64,187,219        |
| 공기업   | 117,531,734 | 121,496,911  | 67,102,878   | 54,394,033        |
| 기 타   | 15,070,759  | 15,063,287   | 5,270,101    | 9,793,186         |

| 회 계 별 | 결 산 상 잉 여 금 명 세          |            |                         |           |            |
|-------|--------------------------|------------|-------------------------|-----------|------------|
|       | 명시이월                     | 사고이월       | 계속비이월                   | 보조금집행잔액   | 순세계잉여금     |
| 합 계   | 108,782,963<br>(217,000) | 25,928,011 | 64,953,823<br>(137,000) | 8,414,428 | 81,577,250 |
| 일반회계  | 102,418,943<br>(217,000) | 25,612,074 | 19,762,280<br>(137,000) | 8,130,296 | 69,545,663 |
| 특별회계  | 6,364,020                | 315,936    | 45,191,543              | 284,133   | 12,031,587 |
| 공기업   | 1,997,282                | 307,086    | 45,191,543              | 207,163   | 6,690,959  |
| 기 타   | 4,366,738                | 8,850      |                         | 76,970    | 5,340,628  |

※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금 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96,601,353천원으로 예산현액 981,189,965천원보다 15,411,388천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70.9%인 706,944,878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89,656,475천원이며

이중 명시이월비 108,782,963천원, 사고이월비 25,928,011천원 및 계속비 64,953,823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414,428천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81,577,250천원이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과 자금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 잉여금은 81,577,250천원임이 확인되었다.

## 나. 일반회계

### 1) 세입

#### 일반회계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 구분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      | 미수납액       |
|-------|-------------|-------------|-------------|-----------|------------|
| 결산액   | 848,587,472 | 877,315,199 | 860,041,155 | 1,964,515 | 15,309,529 |
| 결산확인액 | 848,587,472 | 877,315,199 | 860,041,155 | 1,964,515 | 15,309,529 |
| 차액    | 0           | 0           | 0           | 0         | 0          |

○ 수납액 860,041,155천원은 예산현액의 101.3%로서 11,453,683천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가에 기인한다.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8%이며, 불납결손액은 1,964,515천원이다.

####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 수납액         | 금고출납계산서 금액  | 차액 |
|-------------|-------------|----|
| 860,041,155 | 860,041,155 | 0  |

####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천원)

| 구분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      | 미수납액       | 수납율   |
|------|-------------|-------------|-------------|-----------|------------|-------|
| 2018 | 848,587,472 | 877,315,199 | 860,041,155 | 1,964,515 | 15,309,529 | 98.0% |
| 2017 | 782,015,716 | 803,138,842 | 786,531,404 | 854,993   | 16,607,437 | 97.9% |
| 증감   | 66,571,756  | 74,176,357  | 73,509,751  | 1,109,522 | -1,297,908 |       |

##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 재원별              | 구분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      | 미수납액       |
|------------------|--------|-------------|-------------|-------------|-----------|------------|
| 합계               |        | 848,587,472 | 877,315,199 | 860,041,155 | 1,964,515 | 15,309,529 |
| 자체<br>수입         | 소계     | 76,657,876  | 101,567,363 | 84,293,319  | 1,964,515 | 15,309,529 |
|                  | 지방세    | 53,333,000  | 65,374,228  | 59,011,849  | 1,732,787 | 4,629,592  |
|                  | 세외수입   | 23,324,876  | 36,193,135  | 25,281,470  | 231,728   | 10,679,937 |
| 이전<br>수입         | 소계     | 592,359,676 | 596,196,726 | 596,196,726 | -         | -          |
|                  | 지방교부세  | 335,628,821 | 340,182,083 | 340,182,083 | -         | -          |
|                  | 조정교부금등 | 26,000,000  | 26,729,368  | 26,729,368  | -         | -          |
|                  | 보조금    | 230,730,855 | 229,285,275 | 229,285,275 | -         | -          |
| 보전수입 등<br>및 내부거래 |        | 179,569,920 | 179,551,110 | 179,551,110 | -         | -          |

### ○ 세입결산 개요

- 수납액은 전년도 786,531,404천원보다 73,509,751천원이 많은 860,041,155천원이 수납되어 9.3% 증가
-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854,993천원보다 1,109,522천원 증가한 1,964,515천원이며 불납결손의 주된 사유는 무재산 898,384천원, 평가액 부족 611,320천원, 시효소멸 234,284천원, 행방불명 133,140천원 등 임
-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6.8%인 59,011,849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25,281,470천원, 지방교부세는 39.6%인 340,182,083천원, 조정교부금 등은 26,729,368천원, 보조금 등은 229,285,275천원이 수납되었다.

## 2) 세 출

### 일반회계 세출 결산 확인

(단위 : 천원)

| 회 계 별 | 예 산 액       | 예산현액        | 지 출 액       | 이 월 액       | 불 용 액      |
|-------|-------------|-------------|-------------|-------------|------------|
| 결산액   | 762,552,679 | 848,587,472 | 634,571,900 | 148,147,297 | 65,868,275 |
| 결산확인액 | 762,552,679 | 848,587,472 | 634,571,900 | 148,147,297 | 65,868,275 |
| 차액    | 0           | 0           | 0           | 0           | 0          |

#### ○ 세출결산 개요

- 예산액은 762,552,679천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122,034,793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848,587,472천원임
- 세출예산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05%인 424,000천원으로 전용의 주요 내용은 2018 평창올림픽 지원 및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에 기인한 것임
- 이체는 예산현액의 0.7%인 5,851,025천원으로서 업무이관과 직제 개편 등에 기인함
- 예비비 예산액은 29,812,902천원으로서 한발재해대책(자체) 사업 외 15건 1,456,620천원을 지출결정하여 1,357,061천원을 지출하였음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4.7%에 해당하는 634,571,900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148,147,297천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102,635,943천원, 사고이월액은 25,612,074천원, 계속비이월액은 19,899,280천원 임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8%에 해당하는 65,868,275천원임.

##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 지출액         |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 차액 |
|-------------|-------------|----|
| 634,571,900 | 634,571,900 | 0  |

○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다.

##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 과목      | 2017집행액     | 2018회계연도    |             |      | 전년대비 증감     |       |
|---------|-------------|-------------|-------------|------|-------------|-------|
|         |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율  | 금액          | 비율    |
| 합계      | 615,515,204 | 848,587,472 | 634,571,900 | 74.8 | 19,056,696  | 103.1 |
| 일반공공행정  | 55,036,310  | 57,483,302  | 35,502,809  | 61.8 | -19,533,501 | 64.5  |
| 공공질서및안전 | 5,230,856   | 3,418,754   | 2,457,831   | 71.9 | -2,773,025  | 47.0  |
| 교육      | 7,400,432   | 16,049,762  | 15,066,981  | 93.9 | 7,666,549   | 203.6 |
| 문화및관광   | 24,834,399  | 30,734,100  | 20,567,742  | 66.9 | -4,266,657  | 82.8  |
| 환경보호    | 37,810,485  | 48,553,148  | 44,144,257  | 90.9 | 6,333,772   | 116.8 |
| 사회복지    | 153,672,812 | 186,238,261 | 174,062,583 | 93.5 | 20,389,771  | 113.3 |
| 보건      | 16,535,310  | 24,047,271  | 18,677,681  | 77.7 | 2,142,371   | 113.0 |
| 농림해양수산  | 109,115,893 | 131,244,157 | 105,499,355 | 80.4 | -3,616,538  | 96.7  |
| 산업.중소기업 | 21,653,653  | 7,298,986   | 5,695,781   | 78.0 | -15,957,872 | 26.3  |
| 수송및교통   | 22,322,111  | 69,244,920  | 42,675,293  | 61.6 | 20,353,182  | 191.2 |
| 국토및지역개발 | 74,530,708  | 152,516,051 | 78,879,283  | 51.7 | 4,348,575   | 105.8 |
| 예비비     | 0           | 28,356,282  | 0           | 0    | 0           | 0     |
| 기타      | 87,372,235  | 93,402,478  | 91,342,304  | 97.8 | 3,970,069   | 104.5 |

○ 본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174,062,583천원, 농림해양수산 105,499,355천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사회복지 20,389,771천원이며 가장 증가폭이 큰 부문은 교육으로 전년대비 203.6%가 증가하였다.

## 다. 특별회계

### 1) 세입

####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 천원)

| 회 계 별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 납 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
| 계                     | 132,602,493 | 138,315,207 | 136,560,198 | 2,512 | 1,752,497 |
| 공 기 업 특 별 회 계         | 117,531,734 | 121,997,055 | 121,496,911 |       | 500,144   |
| 상 수 도                 | 41,627,240  | 43,774,800  | 43,377,925  |       | 396,875   |
| 하 수 도                 | 75,904,494  | 78,222,255  | 78,118,986  |       | 103,269   |
| 기 타 특 별 회 계           | 15,070,759  | 16,318,152  | 15,063,287  | 2,512 | 1,252,353 |
| 새 마 을 주 민 소 득 지 원 기 금 | 452,389     | 447,411     | 447,411     |       |           |
| 의 료 급 여               | 2,617,471   | 3,194,137   | 2,639,637   |       | 554,500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 안정 기 금   | 828,422     | 819,178     | 799,855     |       | 19,323    |
| 수 질 개 선               | 1,284,243   | 1,137,891   | 1,137,891   |       |           |
| 농 공 단 지               | 1,000,000   | 912,296     | 912,296     |       |           |
| 논산시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 14,072      | 14,143      | 14,143      |       |           |
| 기반시설부담금               | 151,889     | 151,647     | 151,647     |       |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 3,375,417   | 3,375,582   | 3,375,582   |       |           |
| 주택자금융자기금              | 28,671      | 29,291      | 28,791      |       | 500       |
| 주 택 사 업               | 859,847     | 870,842     | 826,244     | 2,290 | 42,307    |
| 주 차 장 관 리             | 4,025,338   | 4,464,008   | 4,000,627   | 222   | 463,160   |
| 토 지 관 리               | 433,000     | 901,726     | 729,163     |       | 172,563   |
| 결 산 확 인 액             | 132,602,493 | 138,315,207 | 136,560,198 | 2,512 | 1,752,497 |
| 차 액                   | 0           | 0           | 0           | 0     | 0         |



○ 세입결산 개요

- 수납액 136,560,198천원은 예산현액의 102.9%로서 3,957,790천원이 초과수납
-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7%로서 전년도에 비해 0.4% 증가하였음
- 불납결손액은 2,512천원으로서 이는 주로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에 기인하였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 수 납 액       |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 차 액 |
|-------------|-------------|-----|
| 136,560,198 | 136,560,198 | 0   |

-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다.

## 2) 세 출

###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천원)

| 회 계 별                         | 예 산 액      | 예산현액        | 지 출 액      | 이 월 액      | 불 용 액     |
|-------------------------------|------------|-------------|------------|------------|-----------|
| 계                             | 96,211,366 | 132,602,493 | 72,372,979 | 51,871,499 | 8,358,015 |
| 공 기 업 특 별 회 계                 | 81,257,205 | 117,531,734 | 67,102,878 | 47,495,911 | 2,932,945 |
| 상 수 도                         | 34,287,245 | 41,627,240  | 33,506,807 | 6,760,177  | 1,360,256 |
| 하 수 도                         | 46,969,960 | 75,904,494  | 33,596,071 | 40,735,734 | 1,572,689 |
| 기 타 특 별 회 계                   | 14,954,161 | 15,070,759  | 5,270,101  | 4,375,588  | 5,425,070 |
| 새 마 을 주 민 소 득 지 원 기 금         | 452,389    | 452,389     | 100        | 0          | 452,289   |
| 의 료 급 여                       | 2,617,471  | 2,617,471   | 2,218,092  | 0          | 399,379   |
| 국 민 기 초 생 활 수 급 자 생 활 안 정 기 금 | 828,422    | 828,422     | 0          | 0          | 828,422   |
| 수 질 개 선                       | 1,167,645  | 1,284,243   | 895,494    | 8,850      | 379,899   |
| 농 공 단 지                       | 1,000,000  | 1,000,000   | 9,670      | 743,000    | 247,330   |
| 논 산 시 일 반 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     | 14,072     | 14,072      | 0          | 0          | 14,072    |
| 기 반 시 설 부 담 금                 | 151,889    | 151,889     | 0          | 0          | 151,889   |
| 장 기 미 집 행 도 시 계 획 시 설 대 지 보 상 | 3,375,417  | 3,375,417   | 1,410,460  | 0          | 1,964,957 |
| 주 택 자 금 융 자 기 금               | 28,671     | 28,671      | 0          | 0          | 28,671    |
| 주 택 사 업                       | 859,847    | 859,847     | 99,117     | 0          | 760,730   |
| 주 차 장 관 리                     | 4,025,338  | 4,025,338   | 205,101    | 3,623,738  | 196,499   |
| 토 지 관 리                       | 433,000    | 433,000     | 432,067    | 0          | 933       |
| 결 산 확 인 액                     | 96,211,366 | 132,602,493 | 72,372,979 | 51,871,499 | 8,358,015 |
| 차 액                           | 0          | 0           | 0          | 0          | 0         |

○ 세출결산 개요

- 예산액은 96,211,366천원 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6,391,127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32,602,493천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 이용, 이체는 없음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4.6%에 해당하는 72,372,979천원이며, 이월액은 공기업특별회계 47,495,911천원, 기타특별회계 4,375,588천원으로 주로 공영주차장 조성,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사기간 부족 등에 기인한 것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3%에 해당하는 8,358,015천원이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 지 출 액      |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 차 액 |
|------------|-------------|-----|
| 72,372,979 | 72,372,979  | 0   |

- 각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다.

## 라.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단위 : 천원)

| 회 계 별 | 명 시 이 월 |             | 사 고 이 월 |            | 계 속 비 이 월 |            |
|-------|---------|-------------|---------|------------|-----------|------------|
|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 합 계   | 298     | 108,999,963 | 117     | 25,928,010 | 117       | 65,090,823 |
| 일반회계  | 291     | 102,635,943 | 112     | 25,612,074 | 35        | 19,899,280 |
| 특별회계  | 7       | 6,364,020   | 5       | 315,936    | 82        | 45,191,543 |
| 공기업   | 5       | 1,997,282   | 4       | 307,086    | 82        | 45,191,543 |
| 기 타   | 2       | 4,366,738   | 1       | 8,850      | 0         | 0          |

○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검사결과 결산액과 일치하였다.

### 3. 기금 결산

2018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 기 금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 전년도말<br>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           |         | 당해연도말<br>조성액 |
|-------------------------|-------------|--------------|-----------|---------|--------------|
|                         |             | 증가 또는<br>감소액 | 조성액       | 사용액     |              |
| 계                       | 9,378,401   | 421,761      | 1,177,642 | 755,881 | 9,800,162    |
| 자 활 기 금                 | 743,066     | 21,987       | 21,987    | 0       | 765,053      |
| 노 인 복 지 기 금             | 1,109,989   | 8,273        | 18,273    | 10,000  | 1,118,262    |
| 양 성 평 등 기 금             | 1,005,619   | 26,362       | 26,362    | 0       | 1,031,981    |
|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 1,060,853   | 1,861        | 1,861     | 0       | 1,062,714    |
| 체 육 진 흥 기 금             | 1,054,533   | -13,095      | 14,905    | 28,000  | 1,041,438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br>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 36,702      | 35,774       | 110,114   | 74,340  | 72,476       |
|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 800,000     | 0            | 0         | 0       | 800,000      |
| 재 난 관 리 기 금             | 3,113,425   | 247,276      | 880,817   | 633,541 | 3,360,701    |
| 옥외광고발전기금                | 170,700     | 86,290       | 86,290    | 0       | 256,990      |
| 식 품 진 흥 기 금             | 283,515     | 7,033        | 17,033    | 10,000  | 290,548      |

○ 2018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의 조성액 9,378,401천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177,642천원을 더하고 사용액 755,881천원을 공제한 9,800,162천원이다.

최근 5년간의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5년 평균<br>증 가 율 |
|-----------|-------|-------|-------|-------|-------|----------------|
| 전년도말 조성액  | 7,803 | 8,238 | 8,545 | 8,311 | 9,378 | 4.7            |
| 당해연도 조성액  | 1,151 | 1,045 | 3,658 | 4,833 | 1,178 | 0.6            |
| 당해연도 사용액  | 715   | 739   | 3,892 | 3,737 | 756   | 1.4            |
| 당해연도말 조성액 | 8,238 | 8,545 | 8,311 | 9,407 | 9,800 | 4.4            |

- 논산시 기금은 최근 5년간 평균 4.4%p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기금조성에 비해 기금사용의 증가율이 약 0.8%p 낮기 때문이다.
- 검사결과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의 본년도말 현재액은 9,800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393백만원 증가하였으며 본년도 기금의 지출액은 756백만원이다.

#### 4. 재무제표의 결산

2018회계연도 논산시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

| 구 분              | 2017          | 2018          | 전년 대비 증감(-) |        |
|------------------|---------------|---------------|-------------|--------|
|                  |               |               | 금 액         | 비 율    |
| 자 산              | 3,144,791,671 | 3,303,117,165 | 158,325,494 | 5.0    |
| Ⅰ. 유 동 자 산       | 273,389,099   | 341,284,401   | 67,895,302  | 24.8   |
| Ⅱ. 투 자 자 산       | 7,771,155     | 7,050,133     | -721,022    | -9.3   |
| Ⅲ. 일 반 유 형 자 산   | 137,894,639   | 139,753,962   | 1,859,323   | 1.3    |
| Ⅳ. 주 민 편 의 시 설   | 261,963,160   | 292,632,559   | 30,669,399  | 11.7   |
| Ⅴ. 사 회 기 반 시 설   | 2,461,003,938 | 2,519,212,001 | 58,208,063  | 2.4    |
| Ⅵ. 기 타 비 유 동 자 산 | 2,769,680     | 3,184,109     | 414,429     | 15.0   |
| 부 채              | 59,362,967    | 47,355,973    | -12,006,994 | -20.2  |
| Ⅰ. 유 동 부 채       | 19,560,055    | 10,769,962    | -8,790,093  | -44.9  |
| Ⅱ. 장 기 차 입 부 채   | 0             | 0             | 0           | 0      |
| Ⅲ. 기 타 비 유 동 부 채 | 39,802,912    | 36,586,011    | -3,216,901  | -8.1   |
| 순 자 산            | 3,085,428,704 | 3,255,761,191 | 170,332,487 | 5.5    |
| Ⅰ. 고 정 순 자 산     | 2,861,524,982 | 2,871,439,637 | 9,914,655   | 0.3    |
| Ⅱ. 특 정 순 자 산     | 10,802,206    | 0             | -10,802,206 | -100.0 |
| Ⅲ. 일 반 순 자 산     | 213,101,516   | 384,321,554   | 171,220,038 | 80.3   |

○ 2018회계연도 말 논산시의 자산은 3,303,117,165천원으로 전년도의 3,144,791,671천원보다 158,325,494천원(5.0%) 증가하였고, 부채는 47,355,973천원으로 전년도의 59,362,967천원보다 12,006,994천원 감소하였다.

- 2018회계연도 자산의 총계에서 부채의 총계를 차감한 논산시의 순자산은 3,255,761,191천원이며 전년도의 3,085,428,704천원보다 9,914,655천원이 증가하였다.

###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

| 구 분                 | 2017                | 2018                | 전년대비 증감           |            |
|---------------------|---------------------|---------------------|-------------------|------------|
|                     |                     |                     | 금 액               | 비 율        |
| I. 인건비              | 95,555,792          | 106,700,996         | 11,145,204        | 11.7       |
| II. 운영비             | 163,280,518         | 192,007,455         | 28,726,937        | 17.6       |
| III. 정부간이전비용        | 10,676,761          | 12,080,981          | 1,404,220         | 13.2       |
| IV. 민간등이전비용         | 226,598,409         | 229,564,987         | 2,966,578         | 1.3        |
| V. 기타비용             | 39,605,638          | 45,336,172          | 5,730,534         | 14.5       |
| VI. 비용총계(B)         | <b>535,717,118</b>  | <b>585,690,591</b>  | <b>49,973,473</b> | <b>9.3</b> |
| VII. 자체조달수익         | 100,071,794         | 107,999,971         | 7,928,177         | 7.9        |
| VIII. 정부간이전수익       | 553,160,369         | 588,686,878         | 35,526,509        | 6.4        |
| IX. 기타수익            | 9,115,595           | 9,122,856           | 7,261             | 0.1        |
| X. 수익총계(A)          | <b>662,347,758</b>  | <b>705,809,705</b>  | <b>43,461,947</b> | <b>6.6</b> |
| XI. 재정운영결과<br>(B-A) | <b>-126,630,640</b> | <b>-120,119,114</b> | <b>6,511,526</b>  | <b>5.1</b> |

- 2018회계연도의 논산시의 총비용은 585,690,591천원이며 총수익은 705,809,705천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 (-)120,119,114천원이 발생하였고,
- 2018년에 논산시의 총수익은 전년도보다 43,461,947천원이 증가하였고 총비용은 49,973,473천원이 증가하여 재정운영결과 전년도보다 6,511,526천원이 증가하였다.



## 5. 성과보고서

논산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 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8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 구 분     | 전략목표수 | 정책사업목표 |        |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       |           |
|---------|-------|--------|--------|---------------|-------|-----------|
|         |       | 개수     | 지표수(A) | 초과달성, 달성 수(B) | 미달성 수 | 달성률 (B/A) |
| 계       | 10    | 82     | 167    | 152           | 15    | 91        |
| 의회사무국   | 1     | 1      | 2      | 2             | 0     | 100       |
| 전략기획실   | 1     | 2      | 5      | 5             | 0     | 100       |
| 참여예산실   | 1     | 2      | 5      | 4             | 1     | 80        |
| 청렴감사실   | 1     | 1      | 3      | 3             | 0     | 100       |
| 열린홍보실   | 1     | 1      | 5      | 5             | 0     | 100       |
| 친절행정국   | 1     | 28     | 60     | 51            | 9     | 85        |
| 행복도시국   | 1     | 32     | 54     | 52            | 2     | 96.3      |
| 미래발전사업단 | 1     | 4      | 5      | 4             | 1     | 80        |
| 직속기관    | 1     | 6      | 21     | 21            | 0     | 100       |
| 사업소     | 1     | 5      | 7      | 5             | 2     | 71.4      |

- 논산시에서는 본 회계연도의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10개)-정책사업목표(82개)-단위사업(16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 논산시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167개의 지표수 중 152개의 성과지표를 초과달성 및 달성하여 91%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15개의 성과지표를 미달성하였다.

## 6. 결산서의 첨부서류의 결산

### 가. 채 권

#### 채 권 현 황

(단위 : 천원)

| 회 계 별 | 전 년 도 말<br>현 재 액 | 당 해 연 도<br>발 생 액 | 당 해 연 도<br>상 환 소 멸 액 | 당 해 연 도 말<br>현 재 액 |
|-------|------------------|------------------|----------------------|--------------------|
| 계     | 7,593,473        | 294,424          | 887,627              | 7,000,270          |
| 일반회계  | 7,461,707        | 292,649          | 858,566              | 6,895,790          |
| 특별회계  | 51,766           | 1,775            | 29,061               | 24,480             |
| 기 금   | 80,000           | 0                | 0                    | 80,000             |

○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849,170천원으로 확인되었다.

### 나. 채 무

#### 채 무 현 황

(단위 : 천원)

| 회 계 별 | 전 년 도 말<br>현 재 액 | 당 해 연 도<br>발 생 액 | 당 해 연 도<br>상 환 소 멸 액 | 당 해 연 도 말<br>현 재 액 |
|-------|------------------|------------------|----------------------|--------------------|
| 계     | 0                | 0                | 0                    | 0                  |
| 일반회계  | 0                | 0                | 0                    | 0                  |
| 특별회계  | 0                | 0                | 0                    | 0                  |
| 기 금   | 0                | 0                | 0                    | 0                  |

○ 검사결과 채무는 0원으로 확인되었다.

## 다. 공유재산

본 년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총괄

(단위 : 천원)

| 용도       | 구분    | 2017년도말<br>현재액 | 당해 연도 증감   |           | 2018년도말<br>현재액 |
|----------|-------|----------------|------------|-----------|----------------|
|          |       |                | 증          | 감         |                |
| 합계       |       | 1,327,507,350  | 71,809,554 | 9,317,038 | 1,389,999,865  |
| 행정<br>재산 | 소계    | 1,298,171,107  | 71,428,776 | 8,843,869 | 1,360,756,014  |
|          | 공용재산  | 269,025,077    | 12,080,532 | 3,259,816 | 277,845,794    |
|          | 공공용재산 | 1,021,721,606  | 59,342,428 | 5,584,053 | 1,075,479,981  |
|          | 기업용재산 | 788,440        | 0          | 0         | 788,440        |
|          | 보존용재산 | 6,635,983      | 5,816      | 0         | 6,641,799      |
| 일반재산     |       | 29,336,243     | 380,777    | 473,169   | 29,243,851     |

## 라. 물품

본 년도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총괄

(단위 : 천원)

| 구분 | 2017년도말<br>보유현황 | 당해 연도 증감  |         | 2018년도말<br>보유현황 |
|----|-----------------|-----------|---------|-----------------|
|    |                 | 취득        | 처분      |                 |
| 수량 | 1,286           | 134       | 40      | 1,380           |
| 금액 | 8,836,807       | 2,165,695 | 227,227 | 10,775,275      |

### Ⅲ. 통합재정분석

# 2018년 논산시 통합재정분석

## □ 재정운영요약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 2018년   | 2017년   | 증감률 (%) |
|-----------|---------|---------|---------|
| 비 용       |         |         |         |
| 인 건 비     | 106,701 | 95,556  | 11.6%   |
| 운 영 비     | 192,007 | 163,821 | 17.2%   |
| 정부간이전비용   | 12,081  | 10,677  | 13.1%   |
| 민간등이전비용   | 229,565 | 226,598 | 1.3%    |
| 기 타 비 용   | 45,336  | 39,605  | 14.4%   |
| ② 비 용 총 계 | 585,691 | 535,717 | 9.3%    |

| 과 목                   | 2018년    | 2017년    | 증감률 (%) |
|-----------------------|----------|----------|---------|
| 수 익                   |          |          |         |
| 자 체 조 달 수 익           | 108,000  | 100,072  | 7.9%    |
| 정부간이전수익               | 588,687  | 553,160  | 6.4%    |
| 기 타 수 익               | 9,123    | 9,116    | 0.07%   |
| ① 수 익 총 계             | 705,810  | 662,348  | 6.5%    |
| ③ 재정운영결과<br>( ② - ① ) | -120,119 | -126,631 | 5.1%    |

## □ 현황 분석

- 본 회계연도 논산시의 재정운영결과는 1,201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66억원보다 65억원(5.1%)증가함. 이는 자체조달수익과 정부간이전수익이 전년도에 비해 각각 79억원(7.9%), 355억원(6.4%) 증가하였음에도, 비용총계가 전년도에 비해 499억원(9.3%)으로 증가하여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았기 때문임.
- 비용 중 인건비와 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 각각 111억원(11.6%), 281억원(17.2%) 증가하였으며, 정부간이전비용과 민간등이전비용은 전년도에 비해 각각 140억원(13.1%), 57억원(1.3%) 증가함.

## □ 재정상태요약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 2018년     | 2017년     | 증감률 (%) |
|-------------|-----------|-----------|---------|
| 자 산         |           |           |         |
| 유 동 자 산     | 341,284   | 273,389   | 24.8%   |
| 투 자 자 산     | 7,050     | 7,771     | -9.2%   |
| 일 반 유 형 자 산 | 139,754   | 137,895   | 1.3%    |
| 주 민 편 의 시 설 | 292,633   | 261,963   | 11.7%   |
| 사 회 기 반 시 설 | 2,519,212 | 2,461,004 | 2.3%    |
| 기타비유동자산     | 3,184     | 2,770     | 1.5%    |
|             |           |           |         |
|             |           |           |         |
| 자 산 총 계     | 3,303,117 | 3,144,792 | 5%      |

| 과 목         | 2018년     | 2017년     | 증감률 (%) |
|-------------|-----------|-----------|---------|
| 부 채         |           |           |         |
| 유 동 부 채     | 10,770    | 19,560    | -44.9%  |
| 장 기 차 입 부 채 | 0         | 0         | 0%      |
| 기타비유동부채     | 36,586    | 39,803    | -8%     |
| 부 채 총 계     | 47,356    | 59,363    | -20%    |
|             |           |           |         |
| 자 본         |           |           |         |
| 순 자 산       | 3,255,761 | 3,085,429 | 5.5%    |
|             |           |           |         |
| 부채 및 자본총계   | 3,303,117 | 3,144,792 | 5%      |

## □ 현황 분석

- 본 회계연도 논산시의 자산은 3조 3,031억원으로 전년도의 3조 1,447억원보다 1,583억원(5%) 증가함. 세부적으로는 투자자산이 7.2억원 (-9.2%) 감소했으나, 유동자산이 678억원(24.8%) · 일반유형자산이 18억원 (1.3%) · 주민편의시설이 306억원(11.7%) · 사회기반시설이 582억원(2.3%)이 증가함.
- 본 회계연도 논산시의 부채는 473억원으로 전년도의 593억원 보다 120억원(-20%) 감소함. 세부적으로는 유동부채와 기타비유동부채가 각각 88억원(-44.9%), 32억원(-8%) 감소함.

## □ 재무비율 분석

(단위: %, 원)

| 구 분                      | 2018년 | 2017년 | 증감률 (%) | 구 분                    | 2018년       | 2017년       | 증감률 (%) |
|--------------------------|-------|-------|---------|------------------------|-------------|-------------|---------|
| 유 동 성 비 율                | 3,168 | 1,397 | 126%    | 자 체 조 달 수 익 비 율        | 15.3        | 15.11       | 1.25%   |
| 부 채 비 율                  | 1.43  | 1.89  | -24.33% | 정 부 간 이 전 수 익 비 율      | 83.41       | 83.52       | -0.13%  |
| 차 입 금 의 존 도<br>(차입금/총자산) | 0     | 0     | 0%      | 공 무 원 1 인 당<br>창 출 이 익 | 127,312,256 | 136,455,430 | -6.7%   |
| 총 자 산 이 익 률              | 3.63  | 4.02  | -9.7%   | 공 무 원 1 인 당<br>급 여     | 66,152,292  | 64,534,492  | 2.5%    |

## □ 현황 분석

- 재무비율분석에 의하면 본 회계연도의 유동성비율은 3,168%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전년도에 비해 유동성 비율이 126% 증가하여 논산시의 단기 지급능력과 채무상환능력은 상당히 높음. 또한 부채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24.33% 감소하였고, 차입금 의존도가 0.00%로 재무상태가 양호함.
- 재무비율분석에 의하면 본 회계연도의 총자산이익률은 3.63%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전년도 대비 9.7% 감소하였음. 따라서 부실채권에 대한 결손율이 전년도 보다 악화되었으며 지방세 체납액과 미수납액의 효과적인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 재무비율분석에 의하면 본 회계연도의 자체조달 수익비율이 15.3%, 정부간 이전수익 비율도 83.41%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정부간 이전 수익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논산시의 자체적인 운영능력인 자주성은 낮으며 중앙 정부의 의존도는 높음.
- 공무원 1인당 급여는 전년도에 비해 2.5% 증가하였고, 공무원 1인당 창출이익은 6.7% 감소하였음.



## □ 개 선 점

- 논산시 대부분의 수익이 정부간 이전수익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재정 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0.58% 감소한 10.55%로 여전히 낮은 상태임. 따라서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자주성을 높여 나가야할 필요성이 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세수입 확충방안이 필요하며, 잉여금의 재투자를 통한 발전방안이 모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임.
- 단기적으로는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운영비는 절감하고,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미수납금과 결손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함.

# □ 채무증감현황 및 통합재정 분석

## 1. 채무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 분 | 2018 | 2017 | 2016   | 2015   |
|------------------------|---|------|------|--------|--------|
| · 자치단체채무계<br>(a=b+c+d) |   | 0    | 0    | 43,165 | 42,270 |
| - 공채 b                 |   |      |      |        |        |
| - 차입금 c                |   | 0    | 0    | 43,165 | 42,270 |
| - 채무부담행위 d             |   |      |      |        |        |
| · 지방공기업채무(e)           |   | 0    | 0    | 0      | 839    |
| · 채무총합계 (f=a+e)        |   | 0    | 0    | 43,165 | 43,109 |

## 2. 통합재정분석

(단위 : 백만원)

| 재정지표                  | 산정방식  | 2018           | 2017           | 2016          | 2015          | 기준단계 |      |
|-----------------------|---|----------------|----------------|---------------|---------------|------|------|
|                       |   |                |                |               |               | 주의   | 심각   |
| (1) 통합재정수지            | 세입(당년정상수입+자본수입)<br>-지출-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br>+순세계잉여금  | 109,575        | 136,188        | 106,878       | 64,691        | /    | /    |
| (2) 통합재정규모            | 세출+순융자<br>(융자지출-융자회수)   | 713,188        | 721,058        | 661,586       | 586,464       | /    | /    |
| (3)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 (세입-지출 및 순융자)/<br>통합재정규모 x 100  | 15.36%<br>(흑자) | 11.08%<br>(흑자) | 8.65%<br>(흑자) | 6.05%<br>(흑자) | -25% | -30% |
| (4) 예산대비 채무비율         | (지방채무잔액/예산액) x<br>100   | 0.00%          | 0.00%          | 6.01%         | 6.93%         | 25%  | 40%  |
| (5) 지방채무상환 부담률        | (지방채무상환액/일반재원)x100  | 0.00%          | 6.28%          | 0.62%         | 0.77%         | 12%  | 17%  |
| (6) 재정자립도<br>(당초예산기준) | 재정자립도<br>= (지방세 + 세외수입) /<br>자치단체 예산규모 x 100<br>* 지방세 : 보통세 + 목적세<br>(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br>*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br>+ 과년도 수입 | 10.55%         | 11.13%         | 11.44%        | 12.26%        | /    | /    |
| (7) 재정자주도<br>(당초예산기준) | 재정자주도 =<br>(자체수입+ 자주재원<br>)/자치단체 예산규모 x 100<br>*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br>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br>조정교부금 + 재정보조                      | 68.24%         | 67.48%         | 59.38%        | 60.56%        | /    | /    |

## □ 분 석

- 현 채무 잔액이 없으므로, 논산시의 채무의존도는 없음.
-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도에 이어 2018년에도 흑자(1,095억원)로 나타났으며, 통합재정 수지비율도 전년도 보다 4.28% 증가한 15.36%로 전년도에 이어 흑자로 나타나고 있어 통합재정분석결과 논산시의 전반적인 재무상태는 상당히 양호함.  
그러나, 통합재정수지 흑자의 원인이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증가와 불필요한 지출을 절감하여 나온 결과라기보다는 지출예산의 편성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에 기인함.  
따라서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유지하되 지출예산이 효율적이 되도록 편성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채무상환부담률과 예산대비채무비율은 0.00%임.
- 재정자립도는 10.55%(당초예산기준)로 전년도 대비 0.58%감소하였으며,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논산시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음.
- 재정자주도는 68.24%로 전년도보다 0.76%증가하여 논산시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수준이 증가하였음. 이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증가로 인한 것임.

## [통합재정분석 계산내역]

### <통합재정수지>

(단위 : 원)

|         |                 |
|---------|-----------------|
| 세입 (예산) | 822,764,045,000 |
| 지출(-)   | 706,944,878,496 |
| 순융자(-)  | 6,244,105,070   |
| 통합재정수지  | 109,575,061,434 |

### <통합재정규모>

|        |                 |
|--------|-----------------|
| 지출     | 706,944,878,496 |
| 순융자(-) | 6,244,105,070   |
| 통합재정규모 | 713,188,983,566 |

###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                     |                 |
|---------------------|-----------------|
| ①세입                 | 822,764,045,000 |
| ②지출및순융자             | 713,188,983,566 |
| ③통합재정규모             | 713,188,983,566 |
|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①-②)/③) | 15.36%          |

### <예산대비 채무비율>

|               |                 |
|---------------|-----------------|
| ①지방채무잔액       | 0               |
| ②예산액          | 822,764,045,000 |
| 예산대비채무비율(①/②) | 0.00%           |

### <지방채무상환부담율>

|                |                 |
|----------------|-----------------|
| ①지방채무상환액       | 0               |
| ②일반재원          | 412,286,697,000 |
| 지방채무상환부담율(①/②) | 0.00%           |

### <재정자립도(당초예산기준)>

|                |                 |
|----------------|-----------------|
| ①지방세           | 53,333,000,000  |
| ②세외수입          | 23,324,786,000  |
| ③당초예산(일반)      | 726,552,679,000 |
| 재정자립도((①+②)/③) | 10.55%          |

### <재정자주도(당초예산기준)>

|                         |                 |
|-------------------------|-----------------|
| ①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 76,657,786,000  |
| ②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조) | 419,163,948,000 |
| ③당초예산(일반)               | 726,552,679,000 |
| 재정자주도((①+②)/③)          | 68.24%          |

## □ 주요 기능별 세입·세출예산 증감

### < 세입예산 >

(단위 : 백만원)

| 분 야       | 2018년도 예산액 |         | 2017년도 예산액 |         | 증 감    |        |
|-----------|------------|---------|------------|---------|--------|--------|
|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증감률    |
| 합 계       | 726,552    | 100.00% | 687,239    | 100.00% | 39,313 | 5.72%  |
| 지방세수입     | 53,333     | 7.34%   | 54,480     | 7.93%   | -1,147 | -2.10% |
| 세외수입      | 23,324     | 3.21%   | 22,003     | 3.20%   | 1,321  | 6.00%  |
| 지방교부세     | 335,628    | 46.19%  | 308,675    | 44.91%  | 26,953 | 8.73%  |
| 조정교부금등    | 26,000     | 3.57%   | 26,879     | 3.91%   | -879   | -3.27% |
| 보조금       | 230,730    | 31.75%  | 223,471    | 32.52%  | 7,259  | 3.24%  |
| 지방채       | 0          | 0.00%   | 0          | 0.00%   | 0      | 0.00%  |
| 보존수입등내부거래 | 57,535     | 7.91%   | 51,730     | 7.53%   | 5,805  | 11.22% |

## □ 분석

- 특별회계를 제외한 논산시의 2018년도 세입예산 규모 변화를 살펴 보면, 2018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93억원 증가한 7,265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72% 증액되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11억원 감소한 533억원이며, 2018년도 예산의 7.34%로, 전년도 대비 2.1%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3억원 증가한 233억원이며, 2018년도 예산의 3.21%로, 전년도 대비 6% 증가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269억원 증가한 3,356억원이며, 2018년도 예산의 46.19%로, 전년도 대비 8.73% 증가하였음.
-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87억원 감소한 260억원이며, 2018년도 예산의 3.57%로, 전년도 대비 3.27%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72억원 증가한 2,307억원이며, 2018년도 예산의 31.75%로, 전년도 대비 3.24% 증가하였음.
- 보존수입등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58억원 증가한 575억원이며, 2018년도 예산의 7.91%로, 전년도 대비 11.22%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

(단위 : 백만원)

| 분 야           | 2018년도 예산액 |         | 2017년도 예산액 |         | 증 감     |         |
|---------------|------------|---------|------------|---------|---------|---------|
|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증감률     |
| 합 계           | 726,552    | 100.00% | 687,239    | 100.00% | 39,313  | 5.72%   |
| 일 반 공 공 행 정   | 54,647     | 7.52%   | 56,498     | 8.22%   | -1,851  | -3.27%  |
| 공공질서 및 안전     | 1,802      | 0.24%   | 1,350      | 0.20%   | 452     | 33.48%  |
| 교 육           | 9,301      | 1.28%   | 14,001     | 2.04%   | -4,700  | -33.56% |
| 문 화 및 관 광     | 23,967     | 3.29%   | 17,647     | 2.57%   | 6,320   | 38.81%  |
| 환 경 보 호       | 41,995     | 5.78%   | 37,835     | 5.51%   | 4,160   | 10.99%  |
| 사 회 복 지       | 178,455    | 24.56%  | 160,902    | 23.41%  | 17,553  | 10.90%  |
| 보 건           | 20,605     | 2.83%   | 20,508     | 2.98%   | 97      | 0.47%   |
| 농 립 해 양 수 산   | 118,836    | 16.35%  | 117,096    | 17.04%  | 1,740   | 1.48%   |
| 산 업 중 소 기 업   | 5,888      | 0.81%   | 23,374     | 3.40%   | -17,486 | -74.80% |
| 수 송 및 교 통     | 82,761     | 11.39%  | 34,501     | 5.02%   | 48,260  | 139.88% |
| 국 토 및 지 역 개 발 | 95,611     | 13.15%  | 96,419     | 14.03%  | -808    | -0.83%  |
| 예 비 비         | 29,812     | 4.1%    | 17,840     | 2.60%   | 11,972  | 67.10%  |
| 기 타           | 92,862     | 12.78%  | 89,263     | 12.98%  | 3,599   | 4.03%   |

## □ 분 석

- 특별회계를 제외한 논산시의 2018년도 예산의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2018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93억원 증가한 7,265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72% 증액되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일반 공공행정은 전년도 대비 185억원 감소한 54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예산의 7.52%로, 전년도 대비 3.27% 감소하였으며, 사유는 사무관리비 절감 등으로 인한 것임.
- 공공질서 및 안전은 전년도 대비 4.5억원 증가한 1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예산의 0.24%로, 전년도 대비 33.48% 증가하였으며, 사유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등으로 인한 것임.
- 교육은 전년 대비 47억원 감소한 9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예산의 1.28%로, 전년도 대비 33.56% 감소하였으며, 사유는 논산 도서관건립사업 종료 등으로 인한 것임.
- 문화 및 관광은 전년 대비 63억원 증가한 23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예산의 3.29%로, 전년도 대비 38.81% 증가하였으며, 사유는 폐교활용 지역특화자원 플랫폼조성사업 등으로 인한 것임.
- 환경 및 보호는 전년도 대비 41억원 증가한 41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예산의 5.78%로, 전년도 대비 10.99% 증가하였으며, 사유는 전기차등 친환경차량 구입지원 등으로 인한 것임.
- 사회복지는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분야로 전년도 대비 175억원 증가한 1,78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예산의 24.56%로, 전년도 대비 10.9% 증가하였으며, 사유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아동수당지원 증가 등 사회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인한 것임.



- 보건은 전년도 대비 약1억원 증가한 20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예산의 2.83%로, 전년도 대비 0.47% 증가하였으며, 사유는 치매관리 센타신축 등으로 인한 것임.
- 농림해양수산은 두번째로 많은 예산을 편성한 분야로 전년 대비 17억원 증가한 1,18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예산의 16.35%로, 전년도 대비 1.48% 증가하였으며, 사유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등으로 인한 것임.
-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전년도에 대비 174억원 감소한 5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예산의 0.81%로, 전년도 대비 74.8% 감소하였으며, 사유는 산업단지 등 대형사업 조성완료로 인한 것임.
- 수송 및 교통분야는 전년도 대비 482억원 증가한 82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예산의 11.39%로, 전년도 대비 139.88% 증가하였으며, 사유는 도시계획도로조성 등으로 인한 것임.
- 국토 및 지역개발은 전년도 대비 8억원 감소한 95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예산의 13.15%로, 전년도 대비 0.83% 감소하였음.
-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119억원 증가한 29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예산의 4.1%로, 전년도 대비 67.10%증가하였음.
- 기타는 전년도 대비 35억원 증가한 92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예산의 12.78%로, 전년도 대비 4.03% 증가하였으며, 사유는 정규직 전환 등 인건비상승으로 인한 것임.

## IV. 개선 및 권고사항

# 개선 및 권고사항

|                                    |    |
|------------------------------------|----|
| 1.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으로 예산운영 부적정          | 41 |
| 2. 예산이월 최소화 노력 강구                  | 43 |
| 3. 이월사업 운영 부적정                     | 45 |
| 4. 세외수입 징수관리 특단대책 강구               | 47 |
| 5.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소홀                | 51 |
| 6.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징수 소홀         | 54 |
| 7.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징수 소홀       | 56 |
| 8.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부적정                | 58 |
| 9. 폐교활용사업 추진 부적정                   | 61 |
| 10. 보수예산 편성 부적정                    | 63 |
| 11. 대기업 유치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결산 부적정    | 65 |
| 12. 2018년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 67 |
| 13.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가입 적극 추진            | 69 |
| 14.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 71 |
| 1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집행 부적정          | 73 |
| 16. 논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 관리 소홀              | 74 |
| 17. 예비비 지출 부적정                     | 75 |
| 18. 각종 기금 중 유휴 자금 관리 부적정           | 76 |
| 19. 채권현재액보고서 작성 소홀                 | 78 |
| 20. 성과관리 목표의 지표 측정 산식 부적합          | 79 |
| 21. 공유재산 시설운영 관리 개선                | 81 |
| 22. 정수물품 수급관리 부적정                  | 82 |

# 1.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으로 예산운영 부적정

## 현황(일반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년 도     |         |         |         |         | 5년 평균<br>증 가 율 |
|-----------|---------|---------|---------|---------|---------|----------------|
|           | 2018    | 2017    | 2016    | 2015    | 2014    |                |
| 세입결산액(A)  | 996,601 | 935,573 | 832,396 | 717,168 | 673,601 | 10.3           |
| 세출결산액     | 706,945 | 714,069 | 654,073 | 586,807 | 546,073 | 6.7            |
| 순세계잉여금(B) | 81,577  | 56,268  | 49,666  | 29,360  | 25,815  | 33.3           |
| 비율(B/A)   | 8.2     | 6.0     | 6.0     | 4.1     | 3.8     |                |

## 문제점

-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 법령 및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세입예산에 맞추어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예산확정 후 사업의 변경(확대, 축소 또는 취소) 과다계상, 예산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증감 조치 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주민숙원사업에 재투자 하여야 함에도
- 현황과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2018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8.2%에 달함. 특히, 5년 평균 증가율이 세입결산액은 10.3%인 반면,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율은 33.3%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과다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입·세출 예산편성 시 좀 더 세심하게 편성하고 예산 확정 후 여건 변화 시는 그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차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등 건전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 2. 예산이월 최소화 노력 강구

### 현 황

#### ○ 일반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 년 도  | 예산현액<br>(A) | 이 월 액             |                    |                   |                   | 이월액<br>비 율<br>(B/A) | 비 고 |
|------|-------------|-------------------|--------------------|-------------------|-------------------|---------------------|-----|
|      |             | 계(B)              | 명시이월               | 사고이월              | 계속비이월             |                     |     |
| 2018 | 981,189     | 200,018<br>(100%) | 108,999<br>(54.5%) | 25,928<br>(13.0%) | 65,091<br>(32.5%) | 20.4                |     |
| 2017 | 926,386     | 158,425           | 77,899             | 13,879            | 66,647            | 17.1                |     |
| 2016 | 818,908     | 125,407           | 54,096             | 13,381            | 57,930            | 15.3                |     |

####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 년 도  | 예산현액<br>(A) | 이 월 액             |                    |                   |                   | 이월액<br>비 율<br>(B/A) | 비 고 |
|------|-------------|-------------------|--------------------|-------------------|-------------------|---------------------|-----|
|      |             | 계(B)              | 명시이월               | 사고이월              | 계속비이월             |                     |     |
| 2018 | 848,587     | 148,147<br>(100%) | 102,636<br>(69.3%) | 25,612<br>(17.3%) | 19,899<br>(13.4%) | 17.5                |     |
| 2017 | 782,016     | 122,034           | 74,710             | 13,532            | 33,792            | 15.6                |     |
| 2016 | 680,045     | 94,776            | 48,269             | 12,718            | 33,789            | 13.9                |     |

### 문 제 점

- 현황과 같이 3년간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예산현액대비 이월액 및 비율이 매년 증가하였고
- 2018년 이월액이 예산현액대비 20.4%(일반회계 17.5%)로 과다이월 되었으며
- 특히 이월액 중 일반회계의 명시이월이 69.3%를 차지하고 있어 적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이월의 원인을 보면 대부분 선행절차의 지연, 보상협의를 지연,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 추경반영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 이월예산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의 내용을 철저히 분석, 보다 정확한 계획수립 및 공사의 실행,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 3. 이월사업 운영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 부서  | 사업명           | 2018<br>예산액 | 2017<br>이월액 | 예산<br>현액 | 지출<br>원인<br>행위액 | 지출액     | 명시<br>이월액 | 사고<br>이월액 | 집행<br>잔액 |
|-----|---------------|-------------|-------------|----------|-----------------|---------|-----------|-----------|----------|
| 환경과 | 전기자동차<br>구매지원 | 612,000     | 105,000     | 717,000  | 702,850         | 555,320 | 152,000   | 0         | 9,680    |

문제점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 동조 제2항 제1호에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 환경과에서는 당해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사업비의 연내 집행이 곤란하자 2019년도로 명시이월 처리 하였는바 2018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따라 사고이월 처리함이 타당하나 관련 법규 연찬 부족으로 부당하게 명시이월 처리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법규 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월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4. 세외수입 징수관리 특단대책 강구

현 황

징수 현황

(단위 : 천원, %)

| 과 목           | 징수결정액      | 징 수 액      |      | 결 손 액   |     | 미수납액       |      |
|---------------|------------|------------|------|---------|-----|------------|------|
|               |            | 금 액        | 비율   | 금 액     | 비율  | 금 액        | 비율   |
| 합 계           | 36,193,135 | 25,281,470 | 69.9 | 231,728 | 0.6 | 10,679,937 | 29.5 |
| 경 상 적<br>세외수입 | 12,931,728 | 12,854,126 | 99.4 | -       | -   | 77,602     | 0.6  |
| 임 시 적<br>세외수입 | 23,261,407 | 12,427,344 | 53.4 | 231,728 | 1   | 10,602,335 | 45.6 |

※ 임시적 세외수입 체납 중점분야 현황 별첨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 미수납액       | 사 유 별 |           |           |           |         |
|---------------|------------|-------|-----------|-----------|-----------|---------|
|               |            | 거소불명  | 무 재 산     | 고질적체납     | 소송계류중     | 기 타     |
| 계             | 10,679,937 | 219   | 2,977,462 | 6,345,394 | 1,100,540 | 256,322 |
| 경 상 적<br>세외수입 | 77,602     | -     | -         | 59,417    | -         | 18,185  |
| 임 시 적<br>세외수입 | 10,602,335 | 219   | 2,977,462 | 6,285,977 | 1,100,540 | 238,137 |

○ 세외수입 결산 현황(일부부서)

(단위 : 백만원)

| 부서별          | 예산액    | 이월액 | 예산<br>현액 | 징 수<br>결정액 | 수 납 액    |     |            | 불 납<br>결손액 | 미수<br>납액 |
|--------------|--------|-----|----------|------------|----------|-----|------------|------------|----------|
|              |        |     |          |            | 수납<br>총액 | 환급액 | 실 제<br>수납액 |            |          |
| 계            | 23,325 | 0   | 23,325   | 36,193     | 25,309   | 27  | 25,282     | 232        | 10,680   |
| 세 무 과        | 23,276 | 0   | 23,276   | 36,193     | 25,309   | 27  | 25,282     | 232        | 10,680   |
| 환 경 과        | 17     | 0   | 17       | 0          | 0        | 0   | 0          | 0          | 0        |
| 도 로<br>교 통 과 | 19     | 0   | 19       | 0          | 0        | 0   | 0          | 0          | 0        |
| 보 건 소        | 13     | 0   | 13       | 0          | 0        | 0   | 0          | 0          | 0        |

□ 문 제 점

- 지방세와는 달리 관련 부서의 부과·징수 시 수동적인 징수 대책으로 매년 체납액(이월액) 증가되어 2018년 결산기준 106억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고질적인 체납(59.4%)이 대부분으로 이는 적극적인 징수 의지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체납처분 등 강력한 대책수립과 실행이 필요함
- 또한 세외수입 결산 현황을 보면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 교부금 등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항목은 회계관직에 맞게 정리되어 있으나, 세외수입 항목은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모두 취급하고 있어 결산도 취급부서별로 실시해야 함에도 환경과, 도로교통과, 보건소 등 3개 부서만 수입예산을 구분 기재하였고, 이들 부서에서도 실제수납액이 존재함에도 세무과에서 통합 기재한 후 수납액이 없는 것으로 작성하였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부과·징수 관련 부서가 많은 관계로 시 총괄부서(세무과)에서는 분기 또는 반년 단위로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및 징수기법, 사례별 체납처분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 체납관련 주요부서는 체납사안별 실태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 논산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의한 회계관직별로 업무처리 및 결산을 실시하여 책임한계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 ※ 임시적 세외수입 체납 중점분야 현황

- 기준 : 1천만원 이상 체납

(단위 : 천원)

| 세 입 과 목                          | 계         | 2018년   | 지난년도      | 주요담당부서      |
|----------------------------------|-----------|---------|-----------|-------------|
| 계                                | 9,604,241 | 750,158 | 8,854,083 |             |
|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 22,912    | 12,178  | 10,734    | 사 회 복 지 과   |
| 그 외 수 입<br>(보조금 반납 건 등)          | 53,859    | 4,867   | 48,992    | 사 회 복 지 과   |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br>거래신고에관한법         | 127,200   |         | 127,200   | 민 원 토 지 과   |
| 부 동 산 거 래 신 고<br>의 무 위 반 과 태 료   | 69,874    | 69,874  |           | 민 원 토 지 과   |
| 부 동 산 실 권 리 자<br>명 의 등 기 법 과 징 금 | 665,760   | 23,580  | 642,180   | 민 원 토 지 과   |
| 석유및석유대체연료<br>사업법위반과징금            | 85,000    | 30,000  | 55,000    | 사 회 적 경 제 과 |
|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 13,454    | 2,285   | 11,169    | 환 경 과       |
| 감 사 지 적 분                        | 316,313   |         | 316,313   | 산 림 공 원 과   |
| 도 로 손 궤 자 부 담 금                  | 10,368    |         | 10,368    | 도 로 교 통 과   |
| 자 동 차 등 록 위 반 과 태 료              | 40,677    | 2,614   | 38,063    | 도 로 교 통 과   |
| 자 동 차 손 해 배 상 보 장 법<br>위 반 과 태 료 | 3,435,923 | 443,920 | 2,992,003 | 도 로 교 통 과   |
| 자 동 차 검 사 지 연 과 태 료              | 1,085,958 | 131,995 | 953,963   | 도 로 교 통 과   |
| 자 동 차 관 리 법 위 반 과 태 료            | 13,272    | 62      | 13,210    | 도 로 교 통 과   |
| 유 가 보 조 금 지 급 환 수 금              | 15,648    | 15,648  |           | 도 로 교 통 과   |
| 건 축 법 이 행 강 제 금                  | 821,622   | 13,135  | 808,487   | 원 스톱 허 가 과  |
| 변 상 금                            | 2,826,401 |         | 2,826,401 | 맑 은 물 과     |

## 5.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소홀

### □ 현 황

#### ○ 징수현황

(단위 : 천원)

| 회계<br>년도   | 징수결정액   |            | 수 납 액   |           |      | 결손처분액  |           |      | 미수납액   |           |      |
|------------|---------|------------|---------|-----------|------|--------|-----------|------|--------|-----------|------|
|            | 건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비율   | 건수     | 금 액       | 비율   | 건수     | 금 액       | 비율   |
| 2018       | 27,443  | 5,318,649  | 6,345   | 511,127   | 9.6  | 1,153  | 230,792   | 4.3  | 19,945 | 4,576,730 | 86.1 |
| 2017       | 28,534  | 5,034,004  | 8,026   | 662,245   | 13.1 | 169    | 34,159    | 0.7  | 20,339 | 4,337,600 | 86.2 |
| 2016<br>이전 | 157,211 | 16,707,327 | 114,762 | 7,570,556 | 45.3 | 21,666 | 4,927,164 | 29.5 | 20,783 | 4,209,607 | 25.2 |

#### ※ 자동차 위반 유형별 과태료 징수 현황 별첨

#### ○ 미수납액 권리보전조치 현황

(단위 : 천원)

| 회계<br>년도   | 미수납액 계 |           | 부동산 압류 |         |      | 차량 압류  |           |      | 미 조치  |         |      |
|------------|--------|-----------|--------|---------|------|--------|-----------|------|-------|---------|------|
|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비율   | 건 수    | 금 액       | 비율   | 건 수   | 금 액     | 비율   |
| 계          | 19,945 | 4,576,730 | 2,494  | 683,373 | 14.9 | 13,280 | 3,150,501 | 68.8 | 4,171 | 742,856 | 16.2 |
| 2018       | 2,791  | 579,492   | 198    | 49,591  | 8.6  | 2,131  | 444,563   | 76.7 | 462   | 85,338  | 14.7 |
| 2017<br>이전 | 17,154 | 3,997,238 | 2,296  | 633,782 | 15.9 | 11,149 | 2,705,938 | 67.7 | 3,709 | 657,518 | 16.4 |

#### ○ 권리보전 미조치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 회계년도   | 미조치 계 |         | 무재산   |         | 경매진행 |     | 기타  |     |
|--------|-------|---------|-------|---------|------|-----|-----|-----|
|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 계      | 4,171 | 742,856 | 4,171 | 742,856 |      |     |     |     |
| 2018   | 462   | 85,338  | 462   | 85,338  |      |     |     |     |
| 2017이전 | 3,709 | 657,518 | 3,709 | 657,518 |      |     |     |     |

## 문제점

-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4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사업체 폐업·부도 및 대포차와 경제무능력자 소유차량 증가로 자동차 손해보험 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증가하고 있음
- 또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자동차의 말소 제도를 악용하여 납부를 기피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로 권리보전 조치하고 명의이전, 폐차차량 및 차령 초과 말소 차량의 신속한 대체압류 조치하고
-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강제 견인 강구하고, 관허사업의 제한 등 강력 제재를 하여야 함
- 무재산자는 일제조사 후 결손처리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 자동차 위반 유형별 과태료 징수 현황

(단위 : 천원, %)

| 회계<br>연도   | 위 반 유 형          | 징수결정액   |            | 수 납 액   |           |      | 결손처분액  |           |      | 미수납액   |           |      |
|------------|------------------|---------|------------|---------|-----------|------|--------|-----------|------|--------|-----------|------|
|            |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비율   | 건 수    | 금 액       | 비율   | 건 수    | 금 액       | 비율   |
| 2018       | 계                | 27,443  | 5,318,649  | 6,345   | 511,127   | 9.6  | 1,153  | 230,792   | 4.3  | 19,945 | 4,576,730 | 86.1 |
|            |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 114     | 13,286     | 104     | 10,672    | 80.3 | -      | -         | -    | 10     | 2,614     | 19.7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 4,853   | 569,667    | 2,717   | 124,847   | 21.9 | -      | -         | -    | 2,136  | 444,820   | 78.1 |
|            |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 1,845   | 213,694    | 1,202   | 81,699    | 38.2 | -      | -         | -    | 643    | 131,995   | 61.8 |
|            |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 16      | 1,481      | 14      | 1,418     | 95.7 | -      | -         | -    | 2      | 63        | 4.3  |
|            | 지난연도             | 20,615  | 4,520,521  | 2,308   | 292,491   | 6.5  | 1,153  | 230,792   | 5.1  | 17,154 | 3,997,238 | 88.4 |
| 2017       | 계                | 28,534  | 5,034,004  | 8,026   | 662,245   | 13.1 | 169    | 34,159    | 0.7  | 20,339 | 4,337,600 | 86.2 |
|            |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 176     | 20,267     | 167     | 17,376    | 85.7 | -      | -         | -    | 9      | 2,891     | 14.3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 5,130   | 355,349    | 3,206   | 113,030   | 31.8 | -      | -         | -    | 1,924  | 242,319   | 68.2 |
|            |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 2,143   | 256,007    | 1,550   | 129,749   | 50.7 | -      | -         | -    | 593    | 126,258   | 49.3 |
|            |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 4       | 447        | 3       | 414       | 92.6 | -      | -         | -    | 1      | 33        | 7.4  |
|            | 지난연도             | 21,081  | 4,401,934  | 3,100   | 401,676   | 9.1  | 169    | 34,159    | 0.8  | 17,812 | 3,966,099 | 90.1 |
| 2016<br>이전 | 계                | 157,211 | 16,707,327 | 114,762 | 7,570,556 | 45.3 | 21,666 | 4,927,164 | 29.5 | 20,783 | 4,209,607 | 25.2 |
|            |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 3,062   | 399,019    | 2,878   | 342,898   | 85.9 | 78     | 26,842    | 6.7  | 106    | 29,279    | 7.4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 109,971 | 11,860,591 | 77,621  | 4,820,338 | 40.6 | 16,753 | 3,889,670 | 32.8 | 15,597 | 3,150,583 | 26.6 |
|            |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 43,812  | 4,403,598  | 33,980  | 2,376,150 | 54.0 | 4,835  | 1,010,652 | 23.0 | 4,997  | 1,016,796 | 23.0 |
|            |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 366     | 44,119     | 283     | 31,170    | 70.7 | -      | -         | -    | 83     | 12,949    | 29.3 |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500만원 이상) 체납자 수 66명(1인 최고 22건 11,108천원)



## 6.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징수 소홀

### 현 황

#### 징수현황

(단위 : 천원)

| 회계년도   | 징수결정액 |         | 수 납 액 |         | 결손처분액 |     | 미수납액 |        |
|--------|-------|---------|-------|---------|-------|-----|------|--------|
|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 계      | 1,566 | 150,935 | 1,340 | 129,140 | 0     | 0   | 226  | 21,795 |
| 2018   | 490   | 52,907  | 420   | 43,066  | 0     | 0   | 70   | 9,841  |
| 2017이전 | 1,076 | 98,028  | 920   | 86,074  | 0     | 0   | 156  | 11,954 |

#### 미수납액 권리보전조치 현황

(단위 : 천원)

| 회계년도   | 미수납액 계 |        | 부동산 압류 |     | 차량 압류 |        | 미 조 치 |        |
|--------|--------|--------|--------|-----|-------|--------|-------|--------|
|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 계      | 226    | 21,795 | 0      | 0   | 129   | 11,247 | 97    | 10,548 |
| 2018   | 70     | 9,841  | 0      | 0   | 0     | 0      | 70    | 9,841  |
| 2017이전 | 156    | 11,954 | 0      | 0   | 129   | 11,247 | 27    | 707    |

### 문 제 점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인력 부족과
- 시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익증진의 인식부족 및 홍보부족, 적극적인 징수 노력 부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 미수납액에 대한 차량 압류 및 부동산 압류 등 권리보전 조치가 미흡함

## □ 개선 및 권고사항

- 장애인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 미수납자 중 권리보전 미조치자에 대하여 차량압류 및 부동산 압류 등 권리보전 조치로 채권을 확보·회수 하여야 함
- 앞으로 체납액 발생 시 징수방안을 수립·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과태료 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7.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징수 소홀

### 현 황

#### 징수현황

(단위 : 천원)

| 회계연도   | 징수결정액 |           | 수 납 액 |         | 결손처분액 |         | 미수납액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계      | 40    | 1,235,580 | 24    | 452,000 | 3     | 111,000 | 13   | 672,580 |
| 2018   | 1     | 23,580    | -     | -       | -     | -       | 1    | 23,580  |
| 2016   | 3     | 276,000   | 1     | 5,000   | -     | -       | 2    | 271,000 |
| 2015이전 | 36    | 936,000   | 23    | 447,000 | 3     | 111,000 | 10   | 378,000 |

#### 미수납액 권리보전조치 현황

(단위 : 천원)

| 회계연도   | 미수납액 계 |         | 부동산 압류 |         | 차량 압류 |        | 미 조치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계      | 13     | 672,580 | 7      | 259,580 | 1     | 30,000 | 5    | 383,000 |
| 2018   | 1      | 23,580  | 1      | 23,580  | -     | -      | -    | -       |
| 2016   | 2      | 271,000 | 1      | 16,000  | -     | -      | 1    | 255,000 |
| 2015이전 | 10     | 378,000 | 5      | 220,000 | 1     | 30,000 | 4    | 128,000 |

### 문 제 점

- 과징금 체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54.4%로 대부분 2015년 이전 체납액으로 징수실적이 부진함
-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의 당해 부동산이 미수납 발생시점에 타인으로 등기이전 되어 채권 권리보전 조치가 어려움

## □ 개선 및 권고사항

- 권리보전 미조치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를 실시 소유재산을 색출하여 권리보전 조치로 채권을 확보·회수하여야 함
- 앞으로 체납액 발생 시 징수 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압류부동산에 공매처분, 무재산자는 결손 처분하는 등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8.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부적정

### 현황

(단위 : 천원)

| 세 부 사 업      | 예 산 액     | 집 행 액 | 불 용 액     | 비 고 |
|--------------|-----------|-------|-----------|-----|
| 국내교류추진 외 24건 | 2,612,409 | 0     | 2,612,409 |     |

※ 세출예산 전액불용액(예산액 10,000천원 이상) 내역 별첨

### 문제점

- 예산승인 후 사업예측 착오, 사업의 취소, 국도비 변경, 예산미집행, 지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마지막 추가경정 또는 간주처리예산 시 까지) 삭감, 조정하여 더 유용한 사업 또는 주민숙원사업에 재투자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 위 현황과 같이 25건 2,612,409천원의 통계목 예산 전체가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음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 분기에 1회라도 집행현황을 점검해 보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 조정하여 전액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 세출예산 전액불용액 내역

○ 기준 : 예산액 10,000천원 이상

(단위 : 천원)

| 과 목                  |                    | 예산액       | 집행액 | 불용액       | 불 용 사 유  | 부 서                |
|----------------------|--------------------|-----------|-----|-----------|--|--------------------|
| 세부사업                 | 통계목                |           |     |           |  |                    |
| 계( 25건 )             |                    | 2,612,409 | -   | 2,612,409 |  |                    |
| 국내교류 추진              | 외빈초청여비             | 10,000    | -   | 10,000    | 집행사유 미발생   | 자치행정과<br>(현 행정지원과) |
| 국내교류 추진              | 행사실비보상금            | 10,000    | -   | 10,000    | 집행사유 미발생   | 자치행정과<br>(현 행정지원과) |
| 인권보장 및 증진            | 연구용역비              | 40,000    | -   | 40,000    |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따른 충청남도 시군 인권 관련<br>사무 중단                     | 자치행정과<br>(현 행정지원과) |
| 이륜자동차 사고알림<br>시범사업   | 사무관리비              | 22,120    | -   | 22,120    | (도)추진불가결정  | 자치행정과<br>(현 행정지원과) |
| 인력운영비<br>(자치행정과)     | 기타직보수              | 100,000   | -   | 100,000   | 청원경찰 퇴직자 없음  | 자치행정과<br>(현 행정지원과) |
| 독거노인공동생활홈<br>운영지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 10,000    | -   | 10,000    | 18년 12월에 도비보조사업이 결정되어 시군에<br>배정됨(사업추진불가로 예산배정 수용불가 의사전달) | 100세행복과            |
| 생활체육진흥               | 기타보상금              | 12,000    | -   | 12,000    | 각종 체육대회 참가자 부상 치료비에 대한 예비비로<br>2018년 부상자 미발생에 따른 예산액 불용  | 관광체육과              |
| 청소년육성                | 출연금                | 50,000    | -   | 50,000    | 재단 설립발기인 총회 연기로 집행하지 못함                                  | 평생교육과              |
| 시장 관리                | 배상금등               | 23,000    | -   | 23,000    |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후 확정부과 미통지                                 | 사회적경제과             |
| 대기업 유치에 위한<br>지원(보조) | 민간자본사업보조<br>(이전재원) | 272,143   | -   | 272,143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 기업의 투자기간 미도래<br>(투자신고시 70%지급, 투자완료시 30%지급)   | 사회적경제과             |
| 농특산물 홍보 및<br>공동브랜드   | 행사운영비              | 10,000    | -   | 10,000    | 2018년 국내·외 농특산물 홍보행사는<br>민간이전사업으로 추진                     | 농업정책과              |
| 특용작물시설현대화<br>지원(버섯)  | 민간자본사업보조<br>(이전재원) | 12,500    | -   | 12,500    | 화재로 인한 버섯재배사 소실로 사업 포기                                   | 농업정책과              |

| 과 목                            |                    | 예산액       | 집행액 | 불용액       | 불 용 사 유  | 부 서                    |
|--------------------------------|--------------------|-----------|-----|-----------|--|------------------------|
| 세부사업                           | 통계목                |           |     |           |  |                        |
| 돼지경제능력검정<br>경상지원(자치단체)         | 민간경상사업보조           | 30,000    | -   | 30,000    | 우리시 사업대상(정액 등 처리업)은 1개소로 자진폐업<br>(대체 대상자 없음)   | 축산자원과                  |
| 구제역 긴급백신 지원사업                  | 재료비                | 209,000   | -   | 209,000   | 전국적 구제역 확산이 우려되어 국비보조로 일괄배정<br>예산편성(추경2회) 되었으나, 우리시 미발생으로 미집행됨   | 축산자원과                  |
| 헬기임차(보조)                       | 자치단체간부담금           | 122,857   | -   | 122,857   | 당초 도비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도비 미교부로 변경교부<br>결정되어 3회 추경 시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여 집행함  | 산림공원과                  |
| 재해응급복구사업                       | 시설비                | 10,000    | -   | 10,000    | 재해 미발생   | 안전총괄과                  |
| 공동체 가꾸기사업                      | 민간자본사업보조<br>(자체재원) | 10,000    | -   | 10,000    | 사업 수혜자 미발생에 따른 미집행   | 희망마을건설과<br>(현 마을자치분권과) |
| 성동리도 203호 확포장                  | 시설비                | 44,344    | -   | 44,344    |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추진 불가   | 도로교통과                  |
| 논산근대역사문화촌<br>(논산)(광특)          | 시설비                | 1,340,000 | -   | 1,340,000 | 국비 교부결정 없음   | 미래사업과                  |
|                                | 감리비                | 50,000    | -   | 50,000    | 국비 교부결정 없음   | 미래사업과                  |
|                                | 부대비                | 10,000    | -   | 10,000    | 국비 교부결정 없음   | 미래사업과                  |
|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br>(농촌테마공원조성)(광특) | 감리비                | 87,445    | -   | 87,445    | 집행시기미도래 : 해당예산은 2016년 당해예산으로<br>2017.12.26.계약 후 개발계획 행정절차지연 등에 따라<br>2018.11.01. 사업착수되어 예산집행가능 시기<br>2018.12.31내 집행불가하여 불용 | 미래사업과                  |
| 의원 후생복지                        | 의원상해부담금            | 36,000    | -   | 36,000    | 사유 미발생   | 의회사무국                  |
|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                  | 민간자본사업보조           | 70,000    | -   | 70,000    | 부지 미확보로 성광원 화장실신축포기  | 보건소                    |
| 한과, 떡류 소규모 HACCP<br>인증 시범(도비)  | 민간자본사업보조<br>(이전재원) | 21,000    | -   | 21,000    | 5차 재공고에도 미신청   | 농업기술센터                 |

## 9. 폐교활용사업 추진 부적정

### 현황

(단위 : 천원)

| 사업명            | 사업내용                     | 예산액<br>(이월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          | 집행잔액      |
|----------------|--------------------------|--------------------------|-----------|----------|----------|----------|-----------|
|                |                          |                          |           | 계        | 명시<br>이월 | 사고<br>이월 |           |
| 관내 폐교<br>활용 사업 | 함산초등학교<br>외 2개소<br>폐교 매입 | 3,460,156<br>(3,283,676) | 1,059,398 | 944,594  | 91,870   | 852,724  | 1,456,164 |

### 문제점

- 아이들의 꿈과 추억을 머금은 폐교를 활용한 문화, 캠핑 등 각종 체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야곡면 산노리 소재 함산초등학교는 논산 휴먼캠프 조성사업장으로, 가야곡면 왕암리 소재 왕암초등학교는 농촌체험학교 조성사업장으로, 별곡면 조동리 소재 조동초등학교는 생태과학체험 교육관 조성사업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2017년 3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제2회 추경에 34억 6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후
- 충남연구원에 폐교활용방안 용역수행 및 논산교육청과 폐교 매입 절차 진행과정에서 교육청 측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반영과 행정 절차 미비로 사업이 지연되자 불가피하게 사업을 이월시켰고, 당초 3개교 매입 계획을 2개교로 변경함에 따라 잔여 사업비 14억 5천여 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음



- 시에서 사업계획 수립 시는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추진가능성, 성과, 예상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여나감은 물론, 사업 중단이나 당초 사업 계획의 변경을 최소화하여야 하나 본 사업의 경우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치 않은 채 예산을 반영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을 이월시키고 3개교 중 2개교만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무려 2년간 14억여원의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굴 추진할 경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하여 사전에 사업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가능성, 성과,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용역의 실시와 함께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최종적으로 본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을 때 예산을 반영하여 예산의 이월이나 계획변경으로 사업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 10. 보수예산 편성 부적정

### 현 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 부 서 별     | 2018년도 인력 운영비 현황 |            |         | 연금부담금<br>초과부담액 | 비 고 |
|-----------|------------------|------------|---------|----------------|-----|
|           | 예 산 액            | 집 행 액      | 집행잔액    |                |     |
| 전 체       | 57,596,635       | 57,131,980 | 464,655 | 76,709         |     |
| 회 계 과     | 46,205,422       | 46,139,414 | 66,008  | 10,897         |     |
| 보 건 소     | 6,679,879        | 6,436,204  | 243,675 | 40,228         |     |
| 농업기술센터    | 2,599,796        | 2,544,263  | 55,533  | 9,168          |     |
| 공공시설사업소   | 1,100,386        | 1,031,872  | 68,514  | 11,311         |     |
| 의 회 사 무 국 | 1,011,152        | 980,227    | 30,925  | 5,105          |     |

### 문 제 점

-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연금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의 9%를 연4기로 나누어 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까지 공단에 내고, 보수예산이 증감된 경우, 다음기의 연금부담금을 산정할 때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 보수예산에 변동이 발생 된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예산을 삭감 조정하지 않아 연금부담금을 과다 부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바

- 자치행정과에서 2018. 11. 8.자로 “3회 추경 시 공무원 연금부담금 보수예산 적정 편성으로 보수예산 불용액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문서를 시달하였음에도 위 현황과 같이 464,655천원의 보수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하지 아니하여 76,709천원의 연금부담금을 추가 부담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보수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관계부서에서는 보수예산이 매 추가경정예산 및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삭감 조정함으로써 연금부담금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11. 대기업 유치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결산 부적정

## □ 현 황

(단위 : 천원)

| 기업명            | 투 자 계 획   | 예 산 액<br>(이월액)       | 다음연도 이월액 |     |     | 보조금<br>반납금 | 집 행<br>잔 액 |
|----------------|---|----------------------|----------|-----|-----|------------|------------|
|                |   |                      | 계        | 명 시 | 사 고 |            |            |
| (주)0000<br>연구소 | · 면적 : 9,917.5㎡<br>· 규모 : 9,612백만원<br>· 고용인원 : 59명<br>· 투자유형 : 신설투자 | 272,143<br>(272,143) | 0        | 0   | 0   | 48,237     | 223,906    |

## □ 문 제 점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고시 제2016-19호, 2016. 2. 4.) 제10조에 따라 국내 기업 중 지방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부지 또는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 논산시에서는 동산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주)0000연구소에 대하여 지방투자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7년도 예산으로 1,148,280천원(국비 746,382, 도비 160,759, 시비 241,139천원)을 계상한 후 1차 투자 신고 시 70%에 해당하는 803,796천원을 지급하고 잔여보조금 344,484천원 중 시비 72,341천원을 제외한 272,143천원을 2018회계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나 위 입주기업의 투자완료 시점이 2019년 11월로 예정되어 있어 집행하지 못한 채 결산서 작성 시 도비분 48,237천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국비분 223,906천원은 지출잔액으로 처리하였는바

- 위 기업은 2019년 11월경 투자완료계획에 있어 잔여 투자촉진보조금 344,484천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344,484천원을 명시이월하고 부득이 투자가 완료되지 못한 사유로 2019년도로 사고이월 함이 타당함에도 보조금 반납금 및 지출잔액으로 처리하여 도비보조 반납 및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함으로써 도비 및 시비를 추가 확보·지급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사업예산의 집행 및 이월예산 판단 시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 부족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 12 2018년 전통시장 화재 알람시설 설치사업 추진 부작성

### 현 황

(단위 : 천원)

| 부 서        | 사 업 명                   | 예산액     | 지출액 | 다음연도<br>이 월 액 | 집행<br>잔액 | 이 월 사 유  |
|------------|-------------------------|---------|-----|---------------|----------|--|
| 사회적<br>경제과 | 2018년<br>화재알람시설<br>설치사업 | 380,800 | 0   | 380,800       | 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착공예정 : 2019년 2월</li> <li>· 준공예정 : 2019년 6월</li> <li>· 이월사유 : 국비보조금<br/>교부지연 및 소상공인<br/>시장진흥공단과 사업세부<br/>추진방향 검토 필요</li> </ul> |

### 문 제 점

- 전통시장 내 화재알람시설을 지원하여 조기 발화요인(연기, 열, 불꽃 등) 감지 및 소방서, 상인 통보를 통한 화재 초기 진압 등 즉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화재 초기 진화 및 대형 화재로의 확대 방지 등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 알람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 도에서 시달된 설치사업 공문에 의하면 지자체가 전문업체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사후 관리는 지자체와 대상 시장 상인(회)이 하고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는 상인(회)이 부담토록 하고 있음에도 상인(회)에게 사업 추진에 따른 안내와 협조 절차를 구하지 않았고, 예산 편성 이후 시공업체 모집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화재알람시설이 무선제품으로는 KFI형식승인(소방관련 인증) 제품이 없고 유선제품의 경우 점포당 부담기준인 80만원을 초과하므로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명시 이월하고 2019년도 4월 현재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전통시장의 경우 건물의 밀집과 노후로 화재발생 시 피해가 크고 번지는 속도가 빨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설로써 화재알림시설 설치업무가 타업무에 비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처리해야 할 업무로 판단되는 바, 현 추진 상황을 살펴볼 때 사업완료 시점조차 불투명하고 사업비만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은 정부 부처에서 이미 2017년에 6개소 1,445개 점포를 대상으로 105억원을 투입하여 시범사업을 실시 후 점차 확대·보급 중인 사업으로, 논산시 전통시장에 적용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시범사업을 추진한 지자체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소방청 등 관련 기관을 통한 자료 수집과 현장방문, 제조업체 물색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 13.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가입 적극 추진

## 가입 현황

(단위 : 천원)

| 농업<br>인수 | 가입<br>인원 | 가 입 내 역   |            |              |               |                | 자 담<br>(25%) | 비고           |
|----------|----------|-----------|------------|--------------|---------------|----------------|--------------|--------------|
|          |          | 총보험료      | 지 원        |              |               |                |              |              |
|          |          |           | 계<br>(75%) | 국 비<br>(50%) | 도 비<br>(7.5%) | 시 비<br>(17.5%) |              |              |
| 24,214   | 9,967    | 1,124,955 | 842,624    | 561,364      | 84,378        | 196,882        | 282,331      | 가입율<br>41.2% |

※ 2018년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가입 및 지원 현황

## 문 제 점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으로써
- 2018년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가입을 위하여 주민설명회 및 읍면동장, 읍면농업협동조합과 긴밀히 협조하여 2017년에 비해 가입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가입율이 41.2%임
- 안전을 위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부담 25%, 지원액 75%로 지원하고 있는 시책으로 가입실적을 최대한 향상 시켜야 함 (2019년 자부담 15%로 지원 확대)

## 개선 및 권고사항

- 신체상해로 인한 손해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사업으로 농업인이 최대한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 농협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 2018년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가입 및 지원 현황

| 가입농협     | 가입인원<br>(명) | 가입내역 (천원)      |             |              |               |             |
|----------|-------------|----------------|-------------|--------------|---------------|-------------|
|          |             | 총보험료<br>(100%) | 지원          |              |               | 자담<br>(25%) |
|          |             |                | 국비<br>(50%) | 도비<br>(7.5%) | 시비<br>(17.5%) |             |
| 합계       | 9,967       | 1,124,955      | 561,364     | 84,378       | 196,882       | 282,331     |
| 강경농협     | 426         | 42,134         | 21,067      | 3,160        | 7,373         | 10,534      |
| 연무농협     | 684         | 66,471         | 33,236      | 4,995        | 11,655        | 16,585      |
| 성동농협     | 331         | 30,020         | 15,010      | 2,252        | 5,255         | 7,503       |
| 광석농협     | 643         | 72,143         | 36,015      | 5,411        | 12,625        | 18,092      |
| 노성농협     | 1,142       | 109,695        | 54,655      | 8,227        | 19,197        | 27,616      |
| 상월농협     | 1,114       | 107,132        | 53,566      | 8,035        | 18,748        | 26,783      |
| 부적농협     | 596         | 59,242         | 29,423      | 4,443        | 10,367        | 15,009      |
| 논산계룡농협   | 2,374       | 342,693        | 171,299     | 25,703       | 59,972        | 85,719      |
| 양촌농협     | 771         | 73,371         | 36,685      | 5,503        | 12,840        | 18,343      |
| 논산농협     | 1,356       | 170,473        | 85,088      | 12,794       | 29,854        | 42,737      |
| 논산계룡축산농협 | 513         | 49,766         | 24,472      | 3,728        | 8,699         | 12,867      |
| 대전원예농협   | 14          | 1,487          | 684         | 103          | 239           | 461         |
| 부여축협     | 1           | 136            | 68          | 10           | 24            | 34          |
| 회덕농협     | 2           | 192            | 96          | 14           | 34            | 48          |

## 14.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 현 황

(단위 : 천원)

| 부 서        | 사 업 명              | 예산액    | 지출액 | 다음연도<br>이 월 액 | 집행<br>잔액 | 비 고          |
|------------|--------------------|--------|-----|---------------|----------|--------------|
| 사회적<br>경제과 | 사회적경제 청년도제<br>육성사업 | 49,572 | 0   | 49,572        | 0        | 민간경상<br>사업보조 |

### 문 제 점

- 지역의 역량 있는 젊은 인재들의 사회적경제 기업 진입을 유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술전수 및 현장체험 등을 통해 현장의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생력 확보하기 위해 청년도제 육성사업에 공모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바
- 일반적으로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이나 투자대비 효과가 크고, 시의 제반 여건상 사업추진이 용이하여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을 때 공모하게 되며, 일단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결정하여 공모 사업을 신청했다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나
- 그동안 2회에 걸쳐 공고 후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2019사업으로 명시이월한 후 수개월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업무를 방치하고 있음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조속한 시일 내 본 사업의 필요성이나 성과 등 필요한 사항을 재검토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시고 사업의 필요성이 요구 된다면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추진 의지로 본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 1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집행 부적정

## 현 황

(단위 : 천원)

| 세 출 과 목         |              | 예 산 액   |        |        | 보조금 수령액 |        | 집행액     | 비고 |
|-----------------|--------------|---------|--------|--------|---------|--------|---------|----|
| 세부사업            | 통계목          | 계       | 국비     | 시비     | 계       | 국비     |         |    |
| 청년농업인<br>영농정착지원 | 민간경상<br>사업보조 | 128,403 | 89,882 | 38,521 | 82,100  | 82,100 | 128,403 |    |

## 문 제 점

- 2018년 당초예산 편성 후 도로부터 2018. 2. 28. 확정내시 및 2018. 11. 2. 82,100천원으로 제3차 보조금 교부결정(변경) 되었음에도
- 2018. 11. 21. 사업대상 농가수 19명에 대하여 농림수산물교육문화 정보원에 2차 보조금 교부결정하면서 국비를 변경하지 않고 보조 교부하였으며
- 세출예산 집행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보조금, 부담금, 기부금, 지방채 그 밖의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도록 논산시 재무회계규칙 제24조 제1항제2호에 의거 집행을 제한하거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시비를 추가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수정 없이 집행하였음은 부적정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관련법 등 규정을 연찬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16. 논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 관리 소홀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 예산<br>현액 | 징 수<br>결정액 | 수납액     | 미수<br>납액 | 미수납액<br>처 리<br>(결손처분) | 지출액 | 잔 액     | 비 고<br>(이자) |
|------|----------|------------|---------|----------|-----------------------|-----|---------|-------------|
| 2018 | 151,889  | 151,646    | 151,646 | 0        | 0                     | 0   | 151,646 | 755         |
| 2015 | 47,195   | 66,921     | 46,961  | 19,960   | 19,960                | 0   | 46,961  | 466         |

### 문 제 점

-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본법이 2008. 3. 26. 폐지되었습니다.
- 기반시설부담금 [국비(30%), 시비(70%)] 중 2008년도까지 부과되어 체납된 시비분은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2015년 결손처분(19,960천원) 하고, 국비분은 정리 없이 장기간이 경과된 상태임
- 도내 5개 시군(계룡시, 보령시, 홍성군, 부여군, 천안시)이 특별회계를 폐지

### 개선 및 권고사항

- 법률이 폐지되고 업무가 종료된 특별회계로서 장기간 체납된 국비분 징수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동 조례와 특별회계를 정리하기 바랍니다.

## 17. 예비비 지출 부적정

### 현황

(단위 : 천원, %)

| 과 목            |       | 지 출<br>결정액 | 지출액   | 집행<br>잔액 | 집행<br>비율 | 지출결정<br>일 자      | 비 고      |
|----------------|-------|------------|-------|----------|----------|------------------|----------|
| 세부사업           | 통 계 목 |            |       |          |          |                  |          |
| 계              |       | 69,000     | 2,184 | 66,816   | 3.2      |                  |          |
| 버스승강장<br>정비    | 시설비   | 60,000     | 0     | 60,000   | 0        | 2018.<br>12. 18. | 명시<br>이월 |
| 건축행정<br>건실화 사업 | 사무관리비 | 9,000      | 2,184 | 6,816    | 24.3     | 2018.<br>9. 26.  | 과다<br>결정 |

### 문제점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 총 16건 1,456,620천원을 지출결정하여 1,357,061천원을 지출하였으나 위 현황과 같이 사전에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지출결정되어 미집행 또는 과다불용 되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 불가피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지출결정 함으로써 미집행 또는 과다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 18. 각종 기금 중 유휴 자금 관리 부적정

##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 2018년도<br>말 조성액 | 기금 관리      |         |           | 2018년<br>사 용<br>계 획 | 관리부서             |
|-------------------------|-----------------|------------|---------|-----------|---------------------|------------------|
|                         |                 | 보 통<br>예 금 | 정 기 예 금 |           |                     |                  |
|                         |                 |            | 건       | 금 액       |                     |                  |
| 계                       | 9,000,162       | 1,494,477  | 15      | 7,505,685 |                     |                  |
| 자 활 기 금                 | 765,053         | 33,457     | 2       | 731,596   | 없 음                 | 주 민 생 활<br>지 원 과 |
| 노 인 복 지 기 금             | 1,118,262       | 332        | 1       | 1,117,930 |                     | 100세행복과          |
| 양 성 평 등 기 금             | 1,031,981       | 31,981     | 2       | 1,000,000 | 없 음                 | 사 회 복 지 과        |
|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 1,062,714       | 30,076     | 2       | 1,032,638 | 없 음                 | 문 화 예 술 과        |
| 체 육 진 흥 기 금             | 1,041,438       | 6          | 2       | 1,041,432 |                     | 관 광 체 육 과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br>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 72,476          | 72,476     | -       | -         |                     | 환 경 과            |
| 재 난 관 리 기 금             | 3,360,701       | 1,232,701  | 4       | 2,128,000 |                     | 안 전 총 괄 과        |
| 옥외광고발전기금                | 256,989         | 73,900     | 1       | 183,089   | 없 음                 | 도 시 재 생 과        |
| 식 품 진 흥 기 금             | 290,548         | 19,548     | 1       | 271,000   |                     | 보 건 소            |

※ · 예금은행 : 농협은행(시청출장소)

·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도에서 관리로 제외

## 문제점

- 각종 기금의 집행잔액은 집행시기 등을 판단하여 유휴 자금을 세수 증대를 위하여 집행시기별로 분산하여 금리가 높은 예금에 정기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여야 함에도
- 2018년도 사용계획이 없는 4개 기금과 과다 관리한 재난관리기금 등 위 현황과 같이 14억 9천여만원의 기금을 보통예금으로 부적절하게 관리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각종 기금 중 보통예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금을 지출시기 등을 판단하여 신속집행대상 자금을 제외한 유휴 자금을 금리가 높은 정기에금으로 분산 예치 관리토록 하기 바랍니다.



## 19. 채권현재액보고서 작성 소홀

### 현황

(단위 : 원)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발생액    | 당해연도 소멸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br>: 2018년 12월 31일 기준 |
|---------------|-------------|-------------|---------------------------------|
| 7,593,472,790 | 143,325,106 | 887,627,483 | 6,849,170,413                   |

※ 상세내역 별첨

### 문제점

- 지방재정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적용 제외 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은 관리대상으로서
- 미수금 채권 중 재산매각(시유재산)대금 151,100천원을 이행기간 미도래 채권으로 관리하지 않고 채권현재액보고서에서 누락되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채권액 관리에 있어 관련법 등 규정을 연찬하여 결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 20. 성과관리 목표의 지표 측정 산식 부적합

###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 성과목표      |            |     |          |     |     | 결산액     |            |          |
|----|-----------|------------|-----|----------|-----|-----|---------|------------|----------|
|    | 전략<br>목표수 | 정책사업목표     |     | 성과달성도    |     |     | 결산액     | 전년도<br>결산액 | 비교<br>증감 |
|    |           | 개수         | 지표수 | 초과<br>달성 | 달성  | 미달성 |         |            |          |
| 합계 | 10        | 77<br>(82) | 167 | 18       | 134 | 15  | 629,693 | 629,299    | 394      |

### 문제점

- 지방재정법 제5조, 제44조의2 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에 의거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 재정성과 관리제도를 관리하고, 성과보고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목표달성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미달성 및 초과달성한 경우에 원인분석을 제시하고 있음
-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별 측정산식(방법)은 목표의 달성 노력을 통한 달성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함. 일부 성과 지표에 대한 측정산식은 정책사업 목표와 관련성이 적고, 달성기준 미설정, 단순한 예산집행 처리 결과 등을 측정산식으로 설정되어 부적합함

| 부서명      | 성과지표                         | 측정산식                             | 달성도   | 사유분석   |
|----------|------------------------------|----------------------------------|-------|--|
| 친절행정국    | 보훈단체지원                       | 온나라 공문 및 e호조 참조                  | 미달성   | ·고령, 사망자발생 등 사유로 예산지원규모 축소로 미달성<br>⇒ 정당지급하여 효과 있으므로 측정산식 검토    |
|          |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지원             | 〃                                | 〃     | 〃  |
|          | 보육의 질적 서비스 만족도               | ( '만족' 이상 응답자수 / 설문응답자수 )×100    | 〃     | ·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br>· 보육특수시책<br>·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예산집행<br>⇒ 측정산식 검토 |
|          | 공교육 활성화 및 방과 후 지원책 확대        | ( '만족' 이상 응답자수 / 설문응답자수 )×100    | 〃     | · 달성 목표 : 0, 실적 : 0<br>⇒ 목표 80%, 실적 92% 를 착오 기재                |
|          | 어르신 한글대학 참여율                 | ( 한글대학 참여경로당 수 / 전체 경로당 수 ) ×100 | 초과 달성 | · 목표 50%, 실적 302%<br>⇒ 실적 58.6%를 착오 기재                         |
| 미래발전 사업단 | KTX훈련소역 신설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 협의 건수 | 목표치 횟수 / 실제달성횟수                  | 초과 달성 | · 목표 10, 실적 14로 초과달성<br>⇒ 과정 지표관리를 결과 중심적 지표로 개선 검토            |
| 공공시설 사업소 | 국민체육센터 이용자 만족도               | ( '만족' 이상 응답자수 / 설문응답자수 )×100    | 초과 달성 | · 당해연도 목표치기준(55%)이 평가결과(78.3%)보다 큰 차이로 초과 달성<br>⇒ 적정기준 설정 필요   |

## □ 개선 및 권고사항

- 성과계획의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별 측정산식은 성과지표의 적정성(사업목적과 연관성이 있고 결과 중심 지표), 목표수준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노력도가 정확히 측정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 21. 공유재산 시설운영 관리 개선

### 현황

(단위 : 천원, %)

| 구분             | 예산현액    | 지출액     | 잔액      | 설문조사 분석 |      |     |      |
|----------------|---------|---------|---------|---------|------|-----|------|
|                |         |         |         | 목표      | 실적   |     | 성과달성 |
|                |         |         |         |         | 상반기  | 하반기 |      |
| 국민체육센터<br>시설운영 | 793,180 | 692,134 | 101,046 | 55      | 78.3 | 69  | 초과달성 |
| 공설운동장<br>시설운영  | 461,600 | 404,537 | 57,063  | 85      | 75   | 74  | 미달성  |

### 문제점

-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시설 이용에 관한 시민의 설문 평가는 초과달성, 미달성이나 불편사항 개선이 필요함
- 시설이용 불편사항
  - 운동기구 종류 부족·노후, 화장실 이용 불편
  - 프로그램 운영 개선
  - 국민체육센터 입구 바닥 돌붙임 침수 대책

### 개선 및 권고사항

-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시민의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 22. 정수물품 수급관리 부적정

### □ 물품 취득 현황

(단위 : 개, 원)

| 품 명                  | 취 득<br>부서명 | 장부상 취득(A) |             | 사실상 취득(B) |               | A-B |              |
|----------------------|------------|-----------|-------------|-----------|---------------|-----|--------------|
|                      |            | 수량        | 금 액         | 수량        | 금 액           | 수량  | 금 액          |
| 합 계                  |            | 17        | 268,232,670 | 14        | 1,080,450,950 | 3   | -812,218,280 |
| 전 기<br>자동차           | 소 계        | 5         | 130,768,360 | 5         | 197,836,680   | 0   | -67,068,320  |
|                      | 도로교통과      | 1         | 24,766,750  | 1         | 38,766,750    | 0   | -14,000,000  |
|                      | 성 동 면      | 1         | 38,686,400  | 1         | 38,686,400    | 0   | 0            |
|                      | 광 석 면      | 1         | 11,259,890  | 1         | 40,152,710    | 0   | -28,892,820  |
|                      | 은 진 면      | 1         | 27,872,510  | 1         | 40,078,110    | 0   | -12,205,600  |
|                      | 채 운 면      | 1         | 28,182,810  | 1         | 40,152,710    | 0   | -11,969,900  |
| 기 체<br>크로마토<br>그 래 프 | 소 계        | 1         | 39,946,870  | 1         | 320,480,650   | 0   | -280,533,780 |
|                      | 농업기술센터     | 1         | 39,946,870  | 1         | 320,480,650   | 0   | -280,533,780 |
| 액 체<br>크로마토<br>그 래 프 | 소 계        | 1         | 82,065,570  | 1         | 548,064,120   | 0   | -465,998,550 |
|                      | 농업기술센터     | 1         | 82,065,570  | 1         | 548,064,120   | 0   | -465,998,550 |
| 다기능<br>복사기           | 소 계        | 10        | 15,451,870  | 7         | 14,069,500    | 3   | 1,382,370    |
|                      | 관광체육과      | 1         | 4,700,000   | 1         | 4,700,000     | 0   | 0            |
|                      | 평생교육과      | 1         | 4,200,000   | 1         | 4,200,000     | 0   | 0            |
|                      | 희망마을건설과    | 1         | 3,400,000   | 1         | 3,400,000     | 0   | 0            |
|                      | 산림공원과      | 1         | 442,370     | 0         | 0             | 1   | 442,370      |
|                      | 공공시설사업소    | 2         | 940,000     | 0         | 0             | 2   | 940,000      |
|                      | 보건행정과      | 4         | 1,769,500   | 4         | 1,769,500     | 0   | 0            |

※ 결산과 사실상 차이가 있는 물품만 발취함

## □ 문제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물품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바
- 시에서 작성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일부 품명에 대한 사실상 취득현황을 조사한 결과, 위 현황과 같이 수량 및 취득 금액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 주요 원인을 분석해 볼 때, 각 정수물품에 대한 취득은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하고, 회계과에서는 총괄관리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상호 유기적인 협조 없이는 정확한 통계관리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 정수물품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필요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시행함으로써 담당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도 매뉴얼에 따라 정확한 물품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물품총괄 부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각 실과소,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2018년 정수물품에 대하여 사실상 보유수량과 금액을 일치시키고, 금후 정수물품의 취득, 처분 시 장부 정리는 물론, 정수 승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